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 -

윤석진

지역법제 연구 14-16-⑦-6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 본 -**

윤 석 진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 Japan -**

연구자 : 윤석진(강남대 법학과 교수)
Yoon, Suk-Jin

2014.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일본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2012년 차기 ICT 전략인 Active Japan 전략의 수립으로 본격적인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함.
 - Active Japan 전략은 ① Active Life, ② Active Data, ③ Rich Content, ④ Active Communication, ⑤ 사이버보안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Active Data 분야가 일본 빅데이터 정책에 해당함.
 - Active Data 분야는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가능한 환경조성, 데이터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재육성, 빅데이터 신시장·신산업·신기술 창출,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글로벌 협력 강화 등 7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Active Japan 전략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중 Active Data 전략분야에서 우선 2015년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를 밝히고 있음.
 - 2015년까지 추진하는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는 우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빅데이터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음.
 - 아울러,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으로 집중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일본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빅데이터 정책에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II. 주요 내용

- 일본의 Active Japan 전략에서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재정비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
- 2005년 정보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내각관방, 총무성 및 모든 부처, 특별기구 등이 상호 연계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내각관방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전략의 핵심부처가 되었고, 빅데이터 환경정비, 신산업·신서비스·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정비 업무를 총괄
 - 총무성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하며 우선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
 - 경제산업성은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등의 창출을 위한 정책을 문부과학성은 빅데이터 기술연구·개발·실용화 등의 정책추진
 - 그 밖의 개별 부처들은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과 협력하여 부처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책 추진
- 독립행정기관(위원회)으로 2016년까지 “제3자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개별 부처에 산재한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호에 관한 권한을 집중 부여

-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인정(認定)받은 민간단체에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자율규제권한을 부여하고 민관협력 체계에 의한 규제체계 정립
- 일본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과 「정부표준규약」을 제정함.
 -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투명성과 신뢰성”, “국민 참여·민관협동 추진”, “경제 활성화·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보이용자의 공공데이터 2차이용 또는 재이용을 허용하고,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재이용이 가능한 규칙을 공개
 - 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공공 데이터의 재이용을 위한 표시, 타인 저작권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개별법령에 의한 데이터 재이용 제한의 경우 관련 적용원칙 수립
 - 「정부표준규약」은 민간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2차이용 또는 재이용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제한, 제3자에 대한 권리 및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관할, 이용자 책임, 바람직한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음.
- 일본은 빅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2013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2014년)」을 제정함.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과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은 2015년 국회제출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초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은 개인정보 개념의 재정립, 사업자 의무규정 강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제합리화,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제3자 기관체계 정비, 세계화 대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에 있어 옵트 아웃방식 도입, 개인정보의 익명성 저감조치와 민감정보의 취급개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개인의 권리와 이익침해의 사전방지, 집행력 확보, 민간의 자율규제권 강화, 정보의 국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주도의 빅데이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 3.0이 국정과제의 중심을 이루면서 정부에서는 2014부터 공공데이터 개방(미래창조과학부), 국민생활·안전·일자리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사업(안전행정부), 보건의료 관련 정보개방(보건복지부) 등을 발표하거나 일부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3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입안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까지 재검토 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최근 빅데이터 관련 정책추진 동향을 보면, 정부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와 매우 닮아 있음.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빅데이터 및 관련 입법정책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본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동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 주제어 : 빅데이터,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 정부표준 이용규약,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Japan should promote a full-scale big data policies from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ctive Japan strategy(The Next ICT strategy) in 2012
 - Active Japan Strategy consists of five segments, ①Active Life, ② Active Data, ③The Rich Content, ④Active Communication, ⑤ Cyber Security, such as of which Active Data field corresponds to the Japanese Big Data Policy.
 - Active Data is selected a seven initiatives; environment of an open data and the possible utiliz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data reliability and stabil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creating of big data new market, new industry and new technologies,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and the administration system, global cooperation, etc.
- Active Japan strategy is promoting to develop a plan that propelled 2013 to 2021, the first of all, aims to reveal that the “legal system maintenance” in the Active Data Strategy field to 2015.
 - Priority, legal system maintenance for Big Data promoting to 2015 related to that is focused on big data efficiently utilized and activated through an open public data.

- In addition, issues of privacy according to utilization of Big Data has responded by ena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ts the draft amendments to improve.
- This report examines for recent trends promoting of the Big Data policy in Japan, domestic policy, that Big Data aims to derive the direction to pursue.

II. Contents

- The Active Japan strategy in Japan is declaring that you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big data policy implementation, also analyzed.
-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who conducted the ICT projects in 2005, Cabinet Secretariat,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tc. all government departments, special committee(or Organization) correlated with the relevant policies pursued.
- Cabinet Secretariat has been a key of big data strategy in the public sector departments, also it oversees the maintenance work for maintenance of big data environment, new industries and new service and regulations for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personal information's legislation.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 responsible for fostering policy of big data industry and pushing the first open data policy
-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is responsible for a policy of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such as Big Data,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is responsible for a policy of the technologie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in big data.
- Other Individual ministries related agencies by jurisdiction big data business advocacy in cooperation with Cabinet Secretariat,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the Commission), “The Third Parties” to be separately installed by 2016. And this agency has the authority to focused on the handl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departments.
- From third parties authorized by private organizations granting permission for self-regulation for the Big Data related industries. And its established a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 Japan enacted 「Open Data Guidelines」 and 「Government Standard Utilization Articles」 for open of public data.

- 「Open Data Guidelines」 aims to “transparent and reliable”, “public participation and promote public-private cooperation”, “economic activa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 The user of information can use a secondary or re-incorporated in the public data. In principle, it is assumed for the public data copyright does not occur. Government shall disclose the rule is this possible reuse of public data.
 -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basic concept for promoting reuse. And indication for the reuse of public data, tak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copyright of others, for data reuse restrictions apply relevant principles established by separate legislation
- 「Government Standard Utilization Articles」 may establish general use and restrictions on secondary use or reuse of public data by the private sector, prohibited on the rights of others and copyright, Litigation jurisdiction, user responsibility, such a preferred Utilization, etc.
- Japan has enacted to solve the personal information's problem in accordance with utilization of Big Data, 「Policy for reform of the system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2013)」 and 「Outline for reform of the system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2014)」
- 「Policy for reform of the system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2013)」 and 「Outline for reform of the system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2014)」 aims to submit to parliament

in 2015. And it has the character of a revised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Japan.

- 「Policy for reform of the system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2013)」 has as the main content a redefined concept of privacy, strengthening of the obligations of the operat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of third-party service of personal information, strengthen privacy protection, the third parties system maintenance, against globalization, etc.
- 「Outline for reform of the system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2014)」 has as the main content a approach of Opt-out method by introduced in personal information, handling of anonymity reduction measures and improved sensitive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favor eliminating blind spo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e prevention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ensure enforceability, strengthen self-regulation of private partie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information, etc.

III. Expectation

- Korea has conducted a full-scale government-led policy of Big Data from 2014.
- Since the current government has launched the Government 3.0 forms the center of the national issues. Since 2014,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while some such or promotion opened public

data(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leverage big data projects for national life · safety · job creatio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ealth-related information ope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On the other h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ere making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in 2013. However, this guideline has been pointed out that many of the problems. So currently under review.
- In Korea's recent Big Data policies promoted trends, there is very similar to the case of Japan in that it starts from the open public data.
- Korea's big data is a policy and legislative situation did not properly made compared to Japan, in this respect, Recent legislative and policy trends in Japan's Big Data will give us a lot of suggestions.

▶ **Key Words** : Big Data, Administration System,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pen Data Guide Line, Government Standard Utilization Articles, Outline for reform of the system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data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6
제 2 장 일본의 빅 데이터 추진 및 관리체계	29
제 1 절 빅 데이터 정책 수립 배경	29
제 2 절 추진체계	30
1. 기본전략	30
2. Active Data 정책의 내용	32
제 3 절 Active Japan 세부 추진계획	37
1. 단기계획(2013년-2015년)	38
2. 중기계획(2016년-2018년)	40
3. 장기계획(2019년-2020년)	41
제 4 절 주요 기관별 정책 관리체계	42
1. 중앙정부차원의 관리체계	42
2. 독립기관으로서 제3자 기관	52
3. 민간단체	56

제 3 장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제	61
제 1 절 Active Data 전략에 수반된 입법요구	61
1. 개 요	61
2. 빅 데이터 환경정비를 위한 법제개선 사항	61
3. ICT 이용 및 활용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62
4. 추진상황	63
제 2 절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	64
1. 오픈데이터에 관한 주요 내용	64
2. 오픈데이터 이용규칙	66
3.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69
제 4 장 빅 데이터 정책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87
제 1 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연혁	87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89
1. 기본체계	89
2.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90
3.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범위	91
5.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징	95
제 3 절 2013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침 ...	103
1. 제정연혁	103
2. 제도개선 방침의 제정취지	104
3.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방향	105
4. 제도개선방침의 구체적인 내용	108

제 4 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견	112
1. 의견개진 이유	112
2. 제도개선의 기본관점	113
3.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115
4. 국제적 조화의 추진	119
제 5 절 2014년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	119
1. 제정연혁	119
2. 추진과제	120
3. 제도개정 대강의 기본적인 틀	123
4.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125
5. 계속검토 과제	136
제 5 장 시사점	139
제 1 절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139
1. 빅데이터 추진전략으로서 “정부 3.0”	139
2. 최근 국내 빅 데이터 추진사례	145
제 2 절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에 따른 법제도	148
1. 추진체계	148
2.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제	149
3.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	155
제 3 절 시사점 도출	156
1. 국내 법제도 개선현황과의 비교	156
2.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조치	160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감독 기관 설치	166
4. 실질직·체계적 민관협력 체계	167
참 고 문 헌	17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는 지금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를 영유하고 있고, 이 정보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더욱 대량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¹⁾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야기된 정보의 폭발 혹은 정보홍수현상은 전형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스펙데이터 기반 정보체계에서 전형적·비전형적 데이터베이스를 포괄하는 빅 데이터 정보체계로의 전환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경향은 기존 정보화시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와 그 가치가 의미를 갖는 새로운 영역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가치창출 체계는 시장, 기업, 시민사회 영역 등 인간 활동 전 분야로 파급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빅 데이터의 선구자를 민간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 민간보다 일찍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곳은 바로 정부였다.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가 민간부문의 그것과 다른 것은 정부는 정보의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안해야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²⁾

1) 정보화 혁명 또는 디지털시대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있었지만 현실화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2000년만 해도 전 세계에 저장된 정보의 4분의 1만 디지털이었고 나머지 4분의 3은 아날로그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는 전 세계에 저장된 데이터가 약 300exabyte 였는데 이 중 7%만 아날로그였고,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저장된 정보는 1,200exabyte에 이르지만 아날로그방식의 정보는 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M. Hilbert and P. Lopez, "How to Measure the World's Technological Capacity to Communicate, Store and Compute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2012, pp. 1042-1055).

2) 빅토르 마이어 쇠버거/케네스 쿠키어(이지연 역),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

최근 국내외 정부의 정보화 동향을 보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는 정부주도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보다 더 다양한 정보의 가치체계 창출은 민간 부문과 사회에 정부보유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접근권을 허용³⁾하는 이른바 “오픈소스데이터” 기반의 정부 정보화 정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⁴⁾

이로써 오늘날 빅 데이터는 정부와 민간영역을 넘나들면서 모든 국민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반 예측 및 가치창출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처럼 정부 주도의 정보수집체계에서 벗어나 시민상호간, 정부상호간, 시민과 정부 상호 간의 정보협력체계를 수반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빅 데이터의 개념이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정의지 않은 관계로 정책추진에 있어 다양한 논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당초 이 개념은 정보의 양이 너무 커진 나머지, 검토할 데이터량이 데이터 처리에 드는 컴퓨터 메모리에 맞지 않게 되어, 엔지니어들이 분석 틀을 개조해야 했던 상황에서 나왔다.⁵⁾ 그래서 빅 데이터는 Very large DB, Extremely large DB, Total data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기도 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기존 방식으로 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울 정

기 북스, 2013, 214면

3) 빅토르 마이어 쉐이버/케네스 쿠키어(이지연 역), 전계서, 214면.

4)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접근이 개방된 연방 정부 정보 저장소인 ‘data.gov’라는 웹 사이트가 생겨 172개 기관에서 나온 45만개에 달하는 데이터 집합으로 성장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과거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개방하지 않았던 정보를 ‘정보 개방을 촉진하는 규칙’의 발표와 더불어 오픈 데이터 연구소 설립의 지원과 오픈 데이터의 새로운 용도 개척을 촉진하였다. EU 및 세계은행 역시 오픈 데이터 운동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결재, 사회 지표에 관한 데이터들을 개방했고 다른 국제기관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5) 빅토르 마이어 쉐이버/케네스 쿠키어(이지연 역), 전계서, 18면.

도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⁶⁾이라거나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⁷⁾, “큰 용량, 빠른 속도, 그리고 높은 다양성을 갖는 정보 자산으로서 이를 통해 의사결정 및 통찰 발견, 프로세스 최적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처리 방식”⁸⁾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⁹⁾

한편, 일각에서는 데이터 집합 그 자체만을 빅 데이터로 정의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거나, 대규모 데이터 및 관리기술에서 더 나아가 빅 데이터를 학문적 현상의 하나로 포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빅 데이터는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복잡성(complexity) 등의 특징을 가지며, 단순 데이터와 함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시각화, 활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그리고 이러한 빅 데이터의 특성

6) James Manyika & Michael Chui,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McKinsey & Company), 2011, p. 1;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단국법학』 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09면; 그 밖에 McKinsey의 빅데이터 정의와 활용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만재,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활용, 『Internet and Infotmation Security』 제2권 제2호, 2011, 50-52면 참조.

7) John Gantz & David Reinsel,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IVIEW June, 2011, p. 6

8) Laney, Douglas. The Importance of 'Big Data': A Definition(<https://www.gartner.com/login/loginInitAction.do?method=initialize&TARGET=http://www.gartner.com/document/2057415> 에서 인용)

9) 그 밖에도 “더 나은 의사결정, 시사점 발견 및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처리가 필요한 대용량, 초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 자산”(Gartner), “빅데이터 기술을 초고속 수집, 발견, 분석이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으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IDC)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차상욱, 빅 데이터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IT와 법 연구』제8호,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2014, 198면 이하에서 재인용).

10) 빅토르 마이어 쉐이버/케네스 쿠키어(이지연 역), 전계서, 215면

11) 장병열/김영돈,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정책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4면; 오길영, 빅데이터 환경과 개

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제도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빅 데이터의 스펙트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은 민간부문에서는 전반적인 빅 데이터 활용도가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이며, 주로 정부의 진흥정책을 통한 시장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작금에는 일본의 성장정체, 국제경쟁력 저하, 자연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012년 일본 총무성이 차기 ICT 전략인 Active Japan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5대 중점영역에 ‘빅 데이터 이용과 활용에 의한 사회·경제성장 정책’을 포함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Active Japan 전략 중, “Active Data” 부문이 빅 데이터 관련 정책에 해당하며, 여기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기술 연구 및 개발(R&D) 및 인재양성, 사물간 통신 촉진, 표준화, 규제개선, 산학관의 제휴, 성과평가 등의 구체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Active Data 전략은 빅 데이터를 국가 자산화하여 재난관리를 포함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수십 조엔 규모의 데이터 활용시장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R&D 및 인재양성부문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신진연구, 벤처대상 테스트 베드 개장 등의 정책 수행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빅 데이터 연관산업의 진흥정책으로는 빅 데이터 저장과 처리 및 전송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의 전송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M2M 등 연관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정보의보호방안: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2013년 제2차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3, 176면.

마지막으로 일본은 빅 데이터 활성화의 경우 필연적으로 정보보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현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사전동의(Opt-in)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빅 데이터 활용 증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또한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최근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추어 2011년 이래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빅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빅 데이터 시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의 빅 데이터 시장의 패러다임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향후에는 공공부문을 물론이거니와 민간부문에 까지 빅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이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의 흐름은 미국이나 EU 차원의 빅 데이터 전략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규제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정책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빅 데이터 관련 산업육성 정책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 기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본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향후 추진되는 빅 데이터 정책추진에 따른 정보보호의 개선방안도 우리 관련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과 관련 법제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

본의 빅 데이터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일본의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전략에 따른 산업육성 정책과, 최근 빅 데이터 시대의 최대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보안 정책과 입법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일본이 빅 데이터 정책 수행에 기본 틀이 되고 있는 일본의 Active Japan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이 정책은 빅 데이터 산업진흥과 정보보호의 기본적 윤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일본의 법제동향을 살펴보는 데 그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업육성 정책 영역에서 논구되고 있는 법제 동향을 살펴본다. 물론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빅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동향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빅 데이터를 수집·이용·재활용을 수행하는 민간영역에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에 대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 전략의 이행을 위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동향을 분석한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단일법체계가 아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분리적용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 및 공공부문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률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인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심사회설치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기본법이 자 민간영역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 관련 전략과 입법은 대부분 이 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만, 이 법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기본법으로 위치하고 있는바, 해당영역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부분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일본의 빅데이터 전략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은 일본 총무성이 2012년 발표한 “Active Japan” 전략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Active Japan은 총 5개의 하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Active Data 정책영역이 빅 데이터 기반 ICT 사회구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Active Data 정책은 2013년 일본의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으로 이어진다. 또한 2014년 6월 19일에 승인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과 이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초안이 여기에 기초한다.

한편, 일본의 빅데이터 정책은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을 의미하는 “오픈 데이터” 정책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정책은 Active Data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오픈 데이터” 정책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2014년 6월 19일에 각 부처 정보화 총괄책임자(CIO) 연락회의에서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을 최종 승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31일에는 오픈 데이터 유통 추진 컨소시엄에서 제정한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도 승인되었다.

결국,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과 입법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Active Japan(2012)을 필두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2013)」,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2014)」,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2013)」,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2014)」은 빅데이터 전략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과 입법의 기초가 되는 이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중심의 연구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아직 일본의 빅 데이터 관련 법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문헌이 많지 않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은 다수 있지만, 빅 데이터 정책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빅 데이터 정책관련 전문 선행연구문헌 역시 많지 않은 편이다.

12) 빅데이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후 관련 법제개선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법령단위에서 입법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2013)」,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2014)」은 향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는 실제 관련 입법개선에 기초로 활용될지, 아니면 이러한 규약과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공유의 기초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일본의 최근 빅 데이터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일본정부에서 발간한 정책자료 및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고서의 질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최근까지 제정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침(2013)」,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2014)」,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 학술검토 보다는 내용의 대강을 소개하는 문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규정들에 대한 전문해석과 일본에서 발간된 일부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 채택한 연구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빅 데이터 정책 수립이후 기존 일본에서 추진하였던 정보화정책과는 달리 특히 빅 데이터 정책의 추진 및 관리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동향을 살펴본다(제2장).

다음으로 2012년 빅 데이터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일본에서 진행된 관련 입법개선 사항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빅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개선 동향을 살펴보며, 여기에서는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제3장).

일본은 빅 데이터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산업 육성에 기여를 연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일본은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2013)」,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2014)」의 제정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제4장), 이후 일본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제5장)

제 2 장 일본의 빅 데이터 추진 및 관리체계

제 1 절 빅 데이터 정책 수립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른바 “빅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1년 세계최첨단의 IT국가를 지향하며 IT전략본부를 설치하였으나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ICT 환경을 보면, 일본 ICT 국제경쟁력 하락과 더불어, 에너지부족, 저출산/고령화, 고용노동조건의 악화, 재정여건의 악화, 국내산업의 공동화, 사이버 공격의 증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재·감재의 확대 필요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정보량과 트래픽의 증대, 이진 재해에 대한 강한 인프라 요청, 정보보안상의 위협증대, 글로벌 플랫폼, 클라우드, M2M 등 기존의 IT 정책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¹³⁾

이처럼 ICT에 의한 사회모습이 변모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었던 일본은 새로운 ICT 종합 전략의 수립필요성의 재인식과 함께 글로벌한 관점, 기술개발과 사회적 활용의 연동이 고려되는 ICT 전략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Active Japan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 전략은 최근 일본에서 ICT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에 의한 변화, 사회 인프라 등에 ICT 이용 및 활용가능성의 확대, 지식정보의 활용에 의한 지역과제의 해결이나 새로운 문화 등의 창조, 경제활동과 ICT 산업이 융합된 채 이루어지는 글로벌화 진전 등 여러 사회변화를 맞이한 가장 최근의 일본의 ICT 정책에 해당한다.

13) 情報通信審議會, Active Japan ICT 戰略, 2012.7., 4頁

제 2 절 추진체계

1. 기본전략

일본은 2012년 5월 ICT에 기반한 국가주도의 종합진흥정책인 “Active Japan” 계획을 발표하였다.¹⁴⁾ 총무성은 이 전략을 ‘벼랑 끝 일본에서 탈출전략’이라 칭할 정도로 미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Active Japan 계획은 ① Active Life, ② Active Data, ③ Rich Content, ④ Active Communication, ⑤ 사이버보안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Active Japan 전략의 핵심영역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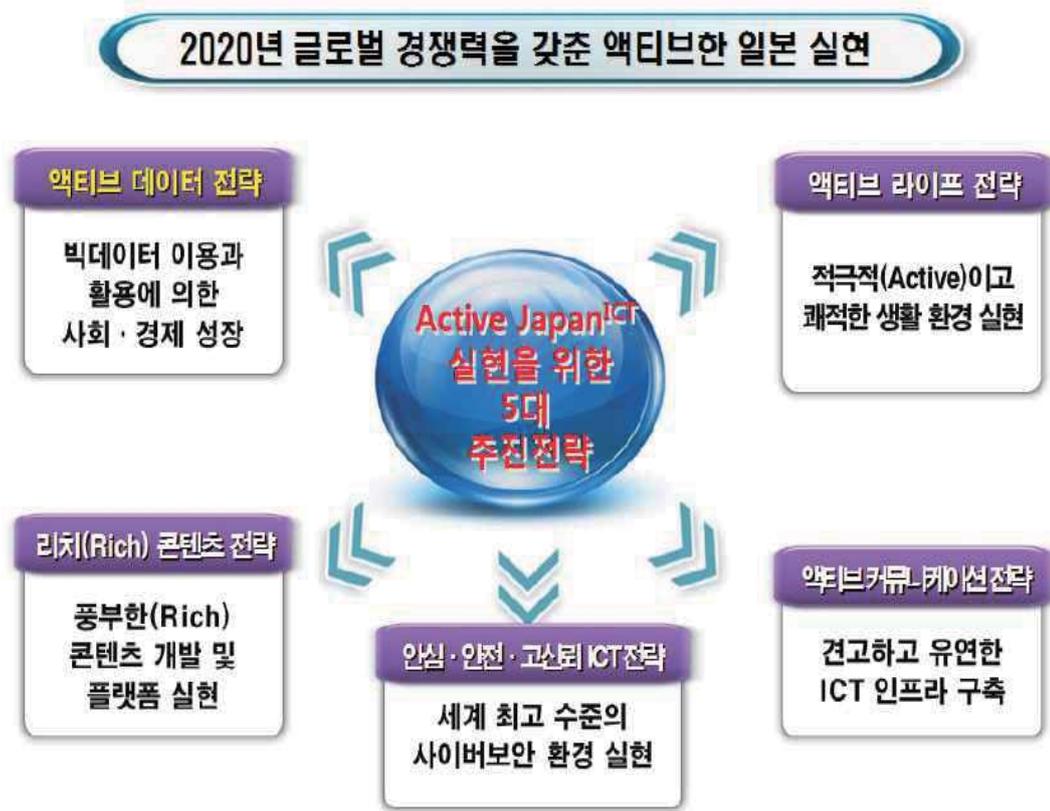
핵심영역	추진방향
Active Life	ICT 활용으로 고령자의 노동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대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ICT 이용 및 활용 환경 실현
Active Data	다중다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해석 등 이용 및 활용하여 과제해결에 연계함과 동시에 수집조 엔의 데이터 이활용 시장 창출
Rich Content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단말로 풍부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TV의 글로벌 플랫폼화
Active Communication	재해 시에도 복구하기 쉽고, 견고한 고성능의 중층적(重層的) 브로드밴드를 구축함으로써 유무선 일체의 세계 최첨단 브로드밴드 환경 실현

14) 이 전략의 정식명칭은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平成23年2月10日付け諮問第17号> 이다.

핵심영역	추진방향
사이버보안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적응하고 사이버 공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환경 구현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Active Japan ICT 전략, 2013, 1면

<그림 1> Active Japan 전략을 위한 5대 추진전략



출처: 總務省,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ICT 戦略’, 자료39-3-2, 2012.7.12

2. Active Data 정책의 내용

(1) 목 표

Active Japan 전략 중, Active Data 부문이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의 중추를 이룬다. Active Data 정책은 다종·다량의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해석하여 재난관리를 포함한 정책과제 해결에 이용함은 물론, 수십 조엔 규모의 데이터 활용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빅 데이터를 국가 자산화하여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Active Data 정책은 하위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이를 위한 빅 데이터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과 같은 세부추진과제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Active Communication 정책과 연계하여 빅 데이터 저장·처리 및 전송을 위한 연관 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하는 등, 빅 데이터 전송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을 병행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¹⁵⁾

(2)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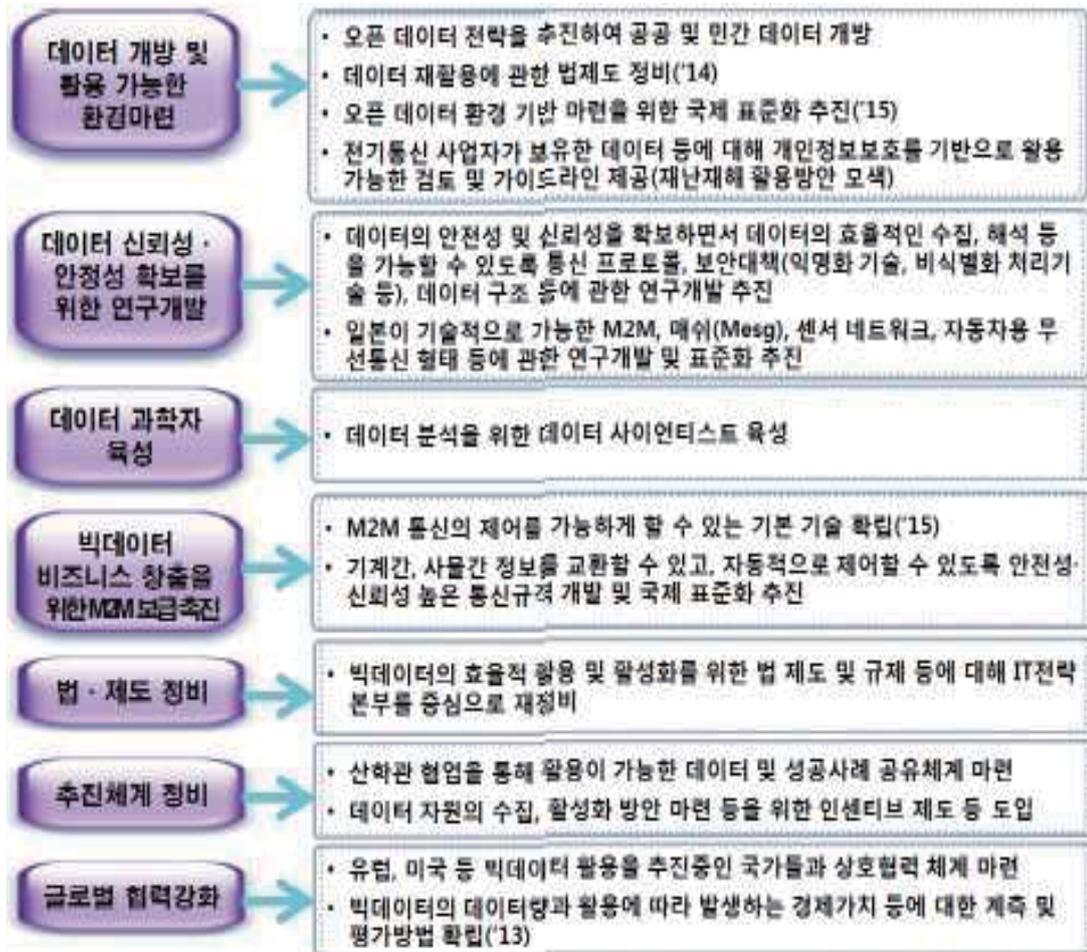
① 배 경

경제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해온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분야 간 수평적 정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신 브로드밴드 환경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데이터 유통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¹⁶⁾

15) 배동민/박현수/오기환, 빅 데이터 동향 및 정책시사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59면 이하 참조

16) 總務省,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그림 2> Active Data 전략을 위한 7대 추진과제



출처: 總務省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ICT 戦略’, 자료39-3-2, 2012.7.12

이로서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과 기업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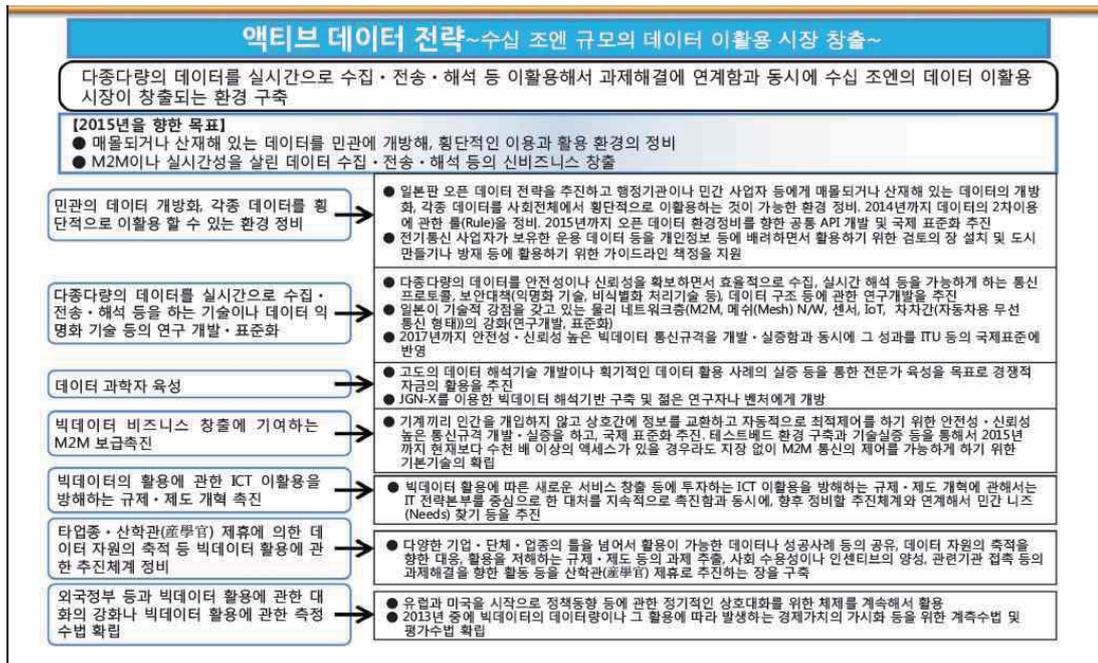
ICT 戰略, 資料 39-3-2, 2012.7.12, 30頁.

② 기본 원칙

일본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2012년 7월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을 책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첫째, 정부가 직접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 둘째,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 사용, 셋째, 영리·비영리 목적을 불문한 활용 촉진, 넷째, 공개가 가능한 공공 데이터부터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¹⁷⁾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민간의 사용을 고려한 빅 데이터의 활용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 개방, 기반기술 연구개발, 활용인재 확보, 표준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¹⁸⁾

<그림 3>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



* 출처: 總務省, 知識情報社会の實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ICT 戦略, 資料 39-3-2, 2012.7.12., 30頁.

17) 總務省, 前掲書, 30頁.
18) 總務省, 前掲書, 30頁.

③ 추진 체계

내각관방장관이 국가 오픈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가 부처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각관방장관이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민관실무자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관실무자회의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등 기본사항 검토, 향후 실시해야 할 시책 검토 및 로드맵 작성, 각종 시책의 검토, 후속작업 추진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3) 경제산업성의 ‘DATA METI 구상’

Active Data 정책 수행에 있어 충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DATA 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경제산업성) 구상’을 하였다. 이는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¹⁹⁾

경제산업성은 이를 통해 계량표준, 지질도, 시험·평가방법, 생물유전정보, 표준물질, 제품사고, 첨단계측기술, 화학물질 관리 등 경제산업성이 보유한 데이터를 선행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8월말 경제산업성이 발족한 ‘공공데이터 워킹그룹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공공데이터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효율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²⁰⁾

19) <http://datameti.go.jp/datameti?lang=ja>

20) <http://datameti.go.jp/datameti?lang=ja>

(4) 그 밖의 세부과제

Active Data 정책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더불어, R&D 개발 및 인력양성, 연관 산업지원, 법제도 정비의 과제가 병행 추진되고록 하고 있다. 첫째, R&D 개발 및 인력양성은 빅 데이터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지원과 빅 데이터 해석기술 전문가 양성, 신진연구자·벤처 대상 테스트베드 개방 등을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이 부분에 약 89.3억엔의 예산을 투자하였다. 둘째, 연관 산업지원은 M2M 등 연관산업 육성과 Active Communication 병행을 통한 빅 데이터 전송기반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관련 법 제도 정비는 우선 빅 데이터 성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입법정비를 포함하고 있다.²²⁾

제 3 절 Active Japan 세부 추진계획

일본 정부의 빅 데이터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2013년 6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추진 전략본부가 발표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의 공정표에서 제시하고 있다.²³⁾ 이 선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IT활용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위해 ①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 창출과 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 실현, ② 국민이 건강하고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사회 실현, ③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22) IT融合フォーラム 公共データワーキンググループ, DATA METI 構想を進めていくためのロードマップ(工程表)(安), (第2回) 配付資料 資料 6 참조(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houjo/it_yugo_forum_data_wg/002_haifu.html).

23) 송대민, 일본의 빅 데이터 동향조사 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9-10면 참조.

언제 어디에서 윈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 전략계획을 공정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부처가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시하는지를 밝히고, 각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개별 역할분담과 달성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꾸준히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책정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⁵⁾

1. 단기계획(2013년-2015년)

목 표	세부계획
제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데이터의 취급에 대해 IT종합 전략 본부 아래에 새로운 검토조직 설치(6월중) 및 검토 작업 착수(내각관방).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배려한 개인 데이터의 활용규칙을 명확히 한 후,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동의를 취득 절차의 표준화 등의 작업을 연내의 가능한 빠른 시기에 착수, 2015 년말 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검토 및 동의 취득절차의 표준화 등을 실시(내각관방).

24) 2012년 일본 빅 데이터 기술·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1년도의 142억 5000만엔 대비 38.2% 성장한 197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39.9%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해 2016년에는 765억 엔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빅 데이터 기술·서비스 시장이 일본 IT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하여 아직은 여명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상품개발의 활용에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차원(건설성, 통산성, 운수성, 우정성, 경찰청)에서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스마트폰형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하여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도로교통 체증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총무성이 2020년까지 중점 추진할 IT 분야의 전략 테마로 ‘대량 데이터 활용’을 선정하였고, 2013년도 예산안에 빅 데이터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일본은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정보 수요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민간 부문 신규사업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송태민, 전계서 9-10면).

25) 이하 송태민, 전계서 9-10면 참조.

목 표	세부계획
	<p>○ 규제개혁 실시계획에 따라 소비자청은 빅 데이터의 이용에 참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의 개정을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하며, 내각관방과 소비자청은 협력하여 합리적인 익명화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2014년 상반기에 수립,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업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소관부처는 합리적인 익명화조치의 내용 사업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을 2014년 중에 명확히 제시(내각관방, 소비자청,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소관부처).</p> <p>○ 제 삼자기관의 설치를 포함하여 새로운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둔 제도 재검토의 방침을 연내에 수립하고, 제도 재검토의 방침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도 배려하면서 각 시책을 실시(내각관방, 관계부처).</p> <p>○ (선행적 조치의 추진) 선행적으로 규정이 책정된 스마트폰의 이용자 정보의 취급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업계단체, 사업자가 함께 규정의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2국가 간 혹은 다 국가 간의 회합의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을 추진(총무성, 관계부처).</p>
활용촉진	<p>○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총무성, 경제산업성)</p> <p>○ 각 분야 (지역활성화, 대중교통, 방재, 의료·건강, 에너지 등)의 실증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빅 데이터의 활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지식구축(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문부과 학성)</p>
인재육성	<p>○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업전략 입안과 신기술의 창출에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육성에 착수(문부과학성).</p>

제2장 일본의 빅 데이터 추진 및 관리체계

목 표	세부계획
기술개발	<p>○ 빅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안전성·신뢰성 향상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처리기술의 고도화 등 공통기술의 조기 확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 추진</p> <p>○ 구체적으로는 빅 데이터의 활용기술 (수집, 전송, 처리, 활용·분석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각 부처가 연계하여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지식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초 기술, 광통신 기술(400Gbps 급) 네트워크 가상화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실시, 정보를 유통 순환시켜,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정보가 활용됨으로써, 신사업 신서비스의 창출 촉진(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p>

2. 중기계획(2016년-2018년)

목 표	세부계획
제도정비	<p>○ 퍼스널 데이터의 활용 규정을 바탕으로 한 검토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동의취득 절차의 표준화 실시(내각관방, 소비자청,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소관부처)</p> <p>○ IT종합 전략본부 아래에 설치된 새로운 검토 조직에서 정리된 제도 재검토 방침에 따라 국제협력도 배려하면서 각 시책을 실시(내각관방, 관계부처).</p>
활용촉진	<p>○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총무성, 경제산업성).</p> <p>○ 각 분야 (지역활성화, 대중교통, 방재, 의료·건강, 에너지</p>

목 표	세부계획
	등의 실증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빅 데이터의 활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지식 구축 (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문부과 학성).
인재육성	○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업전략 입안과 신기술의 창출에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데이터사이언티스트 등)의 육성 착수(문부과학성).
기술개발	<p>○ 빅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안전성·신뢰성 향상 및 상호운용성 확보,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처리기술의 고도화 등 공통기술의 조기 확립,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 추진.</p> <p>○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활용 기술 (수집·전송, 처리, 활용·분석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각 부처가 연계하여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 에서 유용한 정보·지식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응용 기술을 확립하고 구축된 기술의 시장전개를 도모하면서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하여 일본의 개발 기술확립을 추진, 정보를 유통 순환시켜,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정보가 활용됨으로써, 신사업·신서비스의 창출 촉진(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p>

3. 장기계획(2019년-2020년)

목 표	세부계획
제도정비	○ IT종합 전략본부 아래에 설치된 새로운 검토 조직에서 정리된 제도 재검토의 방침에 따라 국제협력도 배려하면서 각 시책 실시(내각관방, 관계부처).

목 표	세부계획
활용촉진	○ 각 분야 (지역 활성화, 대중교통, 방재, 의료·건강, 에너지 등)의 실증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살려,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촉진(내각관방,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인재육성	○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업전략 입안과 신기술의 창출에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육성 착수(문부과학성).
기술개발	○ 빅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및 네트워크의 안전성·신뢰성 향상 및 상호운용성 확보,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처리기술의 고도화 등 공통기술의 조기 확립 도모,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데이터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 ○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활용기술(수집·전송, 처리, 활용·분석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각 부처가 연계하여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지식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실용화하고, 정보를 유통 순환시켜, 분야의 경계를 넘어 정보가 활용됨으로써, 신사업·신서비스의 창출촉진(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제4절 주요 기관별 정책 관리체계

1. 중앙정부차원의 관리체계

(1) 기본 구조

2000년 이후 일본은 정보화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2005년 이후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정보화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R&D 사업 등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2012년에 이르러서 빅 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시행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추진된 일본의 빅 데이터 관련 정책에서도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빅 데이터 관련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은 이들 부처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이들 부처가 일본의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2년 일본의 Active Japan 정책의 수립으로 말미암아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을 비롯 내각관방, 총무성 및 모든 부처, 특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 이후 일본의 빅 데이터 추진전략은 총무성과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재구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총무성은 일본 빅 데이터 전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Active Japan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총무성은 빅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경제성장을 위한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여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목적으로 총무성 산하에 ICT 기본전략위원회(정보통신심의회 소관)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 내에 빅 데이터 활용특별부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빅 데이터 활용특별부회는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며, 그 결과는 Active Japan 전략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인 2013년 6월 일본은 정보화 정책추진을 위해 내각 관방장관 내에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IT 전략본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였다. 이 조직은 공공부분에서의 빅 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로 빅 데이터 환경에 부합하는 중앙부처의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서 내각관방은 공공부분의 빅 데이터

전략의 핵심부처로 부상하였고, 특히 내각관방은 빅 데이터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의 법·제도정비 업무를 총괄한다.

(2) 경제산업성

일본의 정보화 정책과정에서 경제산업성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보대항해(情報大航海)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문부과학성이 2005년부터 추진했던 정보폭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이 주관한 정보대항해 프로젝트는 web정보이던 비 web정보이던 간에 정보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고, 많은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분석하는 액세스 기술 개발 등을 주요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지적정보기술과 융합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 선진적 서비스혁신을 목표로 추진하였다.²⁶⁾

Active Japan 전략이 수립된 이후 경제산업성은 그 역할에 있어 다소간의 변화가 도모되었다. 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총무성과 함께 빅 데이터 관련 신산업 및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빅 데이터 관련 신산업 및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정비(2013년~2015년), 민간영역에서 빅 데이터 관련 신산업 창업지원, 빅 데이터 관련 신기술의 시장화 및 신 서비스 창출촉진(2016년~2021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폭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²⁷⁾ 이 프로젝트는 폭증하는 다양한 정보로부터 필요 정보를 추출

26)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情報処理振興課, 平成19~21年度 情報大航海プロジェクト(評価用資料), 資料7-2, 第1回 情報サービス・ソフトウェアに係る技術に関する施策・事業評価検討会, 2012. 1.7. 3-7頁.

27) 이 프로젝트의 공식명칭은 “정보폭발에 대비한 인프라스트럭처”이다. 이 프로젝

하는 기술, 대량의 정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술, 인간간의 유연한 상호작용으로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진적인 IT 서비스를 인간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²⁸⁾

문부과학성이 주로 정보화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Active Japan 전략에도 반영되어, 빅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문부과학성은 주로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문부과학성은 빅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업전략 입안과 신기술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 사업을 소관하도록 하고 있다(2013년~2015년).

이와 함께 지역활성화, 대중교통, 방재, 의료, 건강,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실증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빅 데이터 활용전략 및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련 기술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활용 기술(수집, 전송, 처리, 활용, 분석 등)개발과 더불어 각 부처가 연계하여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지식을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확립, 일본의 빅 데이터 관련 개발기술 확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2015년~2018년).

문부과학성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Active Japan 전략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1년까지 이어지는 장기프로젝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기술 창출, 빅 데이터 관련 인재육성, 새로운 데이터 활용기

트는 첫째 정보폭발시대의 정보관리, 융합, 활용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둘째, 정보폭발 대비 IT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 셋째, 정보폭발 시대의 휴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Kitsuregawa, M., Challenge for info-plosion, Proceeding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covery Science, 2007, pp. 1-8; Kitsuregawa, M. & Nishida, T., Preface: Special issue on information explosion, New Generation Computing, 28(3), 2010, pp. 207-215
참조

28) 喜連川優, 情報爆発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電子情報通信学会誌, Vol.94, No8, 2011, 662-663頁

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빅 데이터 활용기술 실용화 등의 업무를 소관하도록 하고 있다.

(4) 총무성

① 소관사무

빅 데이터 전략과 관련하여 총무성은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빅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무성은 데이터 개방, 기반기술 연구개발, 표준화, 활용인재 확보, 사물 간 통신 촉진(IoT), 규제개선,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수립 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총무성은 우선 스마트폰의 이용자 정보의 취급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업계단체, 사업자가 함께 규정의 보급을 추진하며, 2 이상의 국가 간의 회합의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도록 하고 있다(2013년~2015년). 그 밖에도 총무성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및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소관하도록 하고 있다(2015년~2021년).

2014년 총무성은 다양한 빅 데이터 가치창출을 목표로 우선 Open Da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pen Data 정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정부 투명성 확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²⁹⁾ 아울러 빅 데이터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데이터의 이용 및 유통원활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³⁰⁾

29) 總務省, 情報通信白書, 2014, 138-140頁.

30) 總務省, 前掲書, 154-164頁; 한편, 경제산업성에서는 개인 데이터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신뢰 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도하다는

② 산하 빅데이터 추진기구 :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

총무성은 빅 데이터 정책영역 중, 일본 중앙부처 정보시스템을 축소시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 빅 데이터 등으로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총무성은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산하에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일명 ‘IT 종합전략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IT 종합전략실은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IT 종합전략실은 일본 재생 전략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정보통신전략을 통해 빅 데이터 환경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³¹⁾

이를 위하여 IT 종합전략실은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을 통해 혁신적인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과 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공 데이터의 민간 개방 추진과 시장에 존재하는 빅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기업활동과 소비자 행동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²⁾

판단을 하였다. 이는 경제산업성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사업자에 의한 개인데이터의 취득과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사업자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히 개인 데이터를 검색 할 때 해결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설명방식을 나타내는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보 제공을 사업자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더 나은 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촉진하는 방법을 정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經濟産業省, パーソナルデータ利活用ビジネスの促進に向けた、消費者向け情報提供・説明の充実のための「評価基準」と「事前相談評価」のあり方について, 2014, http://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1&hl=ko&prev=search&rurl=translate.google.co.kr&sl=ja&u=http://www.meti.go.jp/press/2013/03/20140326001/20140326001.html&usg=ALkJrhi8X1zN-nHR4D7Y4Rlj_Z1GkOFb7g) 참조.

31) 總務省, 前掲書, 154-164頁

32) 總務省, 前掲書, 154-164頁

(6) 내각관방

① 소관사무

일본은 내각관방에게 빅 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정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Active Japan 전략에 따르면, 내각관방은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빅 데이터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개인정보 취득절차의 개선과 표준화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관방은 2014년까지 소비자청,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015년 말까지 최종적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익명화, 표준화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내각관방은 제3자 기관의 설치 및 관리, 각 분야의 실증 프로젝트 등을 통한 빅 데이터 활용의 검토 등을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과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내각관방의 빅 데이터 관련 사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1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업무를 소관하도록 하고 있다. Active Japan 전략에 따르면 내각관방은 중기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5년까지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정과 함께 국제협력 업무를 소관하도록 하고, 아울러 각 분야별 빅 데이터 프로젝트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과 함께 빅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각관방은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에서 제시한 방침에 따라 각 시책의 실시에 관한 총괄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② 산하 빅 데이터 정책 추진 기구 :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본부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은 2012년 7월 4일 총리실 주도로 채택된 “정보통신 기술전략 공정표 개정안”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되며 범 정부차원의 구체화전략이 수립·추진되었다. 이후 총무성의 빅 데이터 활용 기본방침과 이를 이어받은 Active Japan 전략, 문부과학성의 ‘빅 데이터 시대의 아카데미아 도전-아카데미 클라우드에 관한 검토회 제언’, 경제산업성의 ‘IT융합포럼’ 등이 합세하면서, 본격적인 빅 데이터 정책의 추진기반이 조성되었다.³³⁾

이에 따라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정보통신 기술 전략 공정표 개정안”은 총리실 직속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본부(일명 ‘IT 전략본부’)”³⁴⁾에서 추진되었고, 이때 정보통신 기술전략 공정표 개정안에 총무성, 경제산업성 및 부처들 간의 정보화정책의 공조를 전제로 한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추진 내용의 국가 계획을 포함하게 되었다.³⁵⁾

이후 IT 전략본부는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에 있어서 사령탑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IT 전략본부 주도의 빅 데이터 정책은 2020년까지

33)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빅 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분석과 국내 시사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 글로벌 정보통신(ICT)·방송 Weekly Issue,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7. 9., 4-5면.

34)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본부는 일본이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e-Japan 전략(2001년~2003년)”, “e-Japan 전략 II(2003년~2005년)” 국가정보화 전략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내각관방 산하에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의 정보화 정책은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협조하여 정보화 기반정비, 정보화 이용 및 활용 고도화, 정보보호 등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각관방 소속으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본부였다(백의선 외, 일본의 차세대 정보보호 정책방향과 최근동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2면 이하 참조).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본부가 빅 데이터 정책의 추진 이전부터 일본 정보화 정책의 최고 사령탑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일본의 빅 데이터 정책영역에서도 그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5)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개논문, 6면.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31일 일본재생전략 하의 ‘과학기술혁신 정보통신전략’을 공표하였고, 이 전략에서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약 10조엔 규모의 빅 데이터 관련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IT 전략본부의 정책에 힘입어 일본 내 각에서는 2013년 6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신산업·신 서비스 창출, 전자행정서비스 실현을 주축으로 2020년 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³⁶⁾

한편, IT 전략본부는 빅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활용에 있어 옵트 인(opt-in)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본인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에서는 빅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익명정보의 경우 제3자에게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³⁷⁾ 이에 2014년 6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작업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2015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7) 그 밖의 정부부처

일본에서의 빅데이터 정책은 실로 광범위한 부처 소관사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 이외에도 다양한 부처가 소관업무와 관

36)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계논문, 8-9면.

37)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계논문, 10면.

련하여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Active Japan 전략에 따르면 일본의 개별 부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제3자 기관의 설치 및 국제협력 등에 있어서도 내각관방을 필두로 소비자청,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가 모두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분야별 실증 프로젝트의 운영과 신산업·신기술 및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영역도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이 주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각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부처도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기술 종합전략실에서 수립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재검토, 빅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조치 실시 등에 있어서도 개별 부처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일본 빅 데이터 전략에 있어 개별부처는 주된 역할을 총무성,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이 담당하지만, 빅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개별 부처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들 주된 기관과 더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일본 정부부처별 빅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정 책		사업명	담당부처
오픈데이터 · 빅데이터의 활용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추진	이용 rule의 개선	내각관방, 각부성
		데이터카탈로그 관련 사업 추진	내각관방, 각부성
		오픈데이터에 관련 기 반정비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통계데이터의 오픈 추진	총무성, 각부성
		지리공간정보(G공간정	총무성, 국토교통성,

제 2 장 일본의 빅 데이터 추진 및 관리체계

정 책		사업명	담당부처
		보)의 유통기반 정비 등	경제산업성
		오픈데이터의 보급, 계몽 · 발전과 인재육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지리공간정보를 통한 서비스창출과 방재 · 지역활성화 추진	총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오픈데이터 · 빅데이터의 활용	신산업 · 신서비스 창출	오픈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이용 및 활용환경정비	내각관방, 총무성, 각부성
		신산업창출에 대한 지원	총무성, 경제산업성
		각 분야(도로개설, 공공교통, 방재, 의료, 에너지 등)에 있어서의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촉진	관계부성
		빅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한 인재육성	문부과학성
		기초기술의 확립 · 국제 표준 · 실용화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2. 독립기관으로서 제3자 기관

(1) 법적 지위

일본 빅 데이터 전략체계에 있어 제3자 기관은 기존 정보화정책 영역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관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3자 기관은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을 통해 처음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 대강에 따르면, 제3자 기관은 전문적 지식의 집중화,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신속·정확한 법 집행의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중앙부처와 민간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적 입장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⁸⁾

즉, 제3자 기관은 중앙부처의 빅 데이터 관련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소관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중앙부처를 대신하여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대강에서는 제3자 기관의 조직과 권한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관이 빅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매우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강은 제3자 기관을 내각총리대신 산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정리하고 있어,³⁹⁾ 행정조직 체계 내에 설치하는 독립 특별위원회 또는 독립 행정위원회 정도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까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입법화단계에서 제3자 기관의 지위와 권한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축될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제도개정 대강”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에서는 제3자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일변도가 아닌, 이용 및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되는 조직일 것 등의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어, 제3자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영역에서도 중앙부처와 민간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이 부여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38)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2014. 6. 19. 13頁.

39)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2014. 6. 19. 13頁

(2) 조 직

제3자 기관은 내각총리대신 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자 기관에는 개인정보의 배려와 이용 및 유통의 촉진을 실현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별도로 정하게 하고, 제3자 기관에는 전문위원과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⁰⁾

(3) 권 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에 따르면, 제3자 기관은 현재 각 부처별 주무대신이 소관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권한, 즉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권한(조언, 보고요구, 권고, 명령)을 가지며, 여기에 더하여 지도, 입회검사, 공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현재 주무대신이 개인정보보호단체에 대해 가지는 인정 등에 관한 권한(인정, 인정취소, 보고요구, 명령)도 제3자 기관이 갖도록 하고 있다. 대강은 제3자 기관에게 기존 주무대신의 권한만을 이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변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도 함께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⁴¹⁾

한편, 대강은 제3자 기관에게 민간영역이 주도하여 창설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자주규제규칙, 즉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정권한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국경을 넘는 정보유통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창설에 있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인정,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⁴²⁾

40)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2014. 6. 19. 13頁

41)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2014. 6. 19. 13-14頁

42)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2014. 6. 19. 13-14頁

그리고 대강에서는 이들 권한 이외에도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옵트 아웃(opt-out) 규정을 이용한 제3자 제공(목적외 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공표할 수 있는 권한, ② 국제적인 대외창구의 기능과 외국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등의 적절한 취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국 집행당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권한, ③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보호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제출할 권한, ④ 의회에 소관사무의 처리상황과 결과를 보고할 권한,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관련된 소관업무의 시행에 대한 보고 요구 권한 및 관련 결과물에 대한 공표권한, ⑥ 제3자 기관인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칙제정권, ⑦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정책의 개발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⁴³⁾

이처럼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이 제3자 기관에게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등 그 취급에 관한 권한과 국제협력의 권한까지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제3자 기관으로 집중하여 빅 데이터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개별 부처와의 권한 조정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에서는 제3자 기관의 설치에 따른 정부부처대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립기관인 제3자 기관의 설치목적은 감안하여 제3자 기관과 각 정부부처와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3자 기관과 정부부처 주무대신의 권한에 대한 중첩적 집행

綱(検討会案) , 2014. 6. 19. 13-14頁

43)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 2014. 6. 19. 13-14頁

을 피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연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제3자의 집행체제(인원, 예산 등)와 전문적 지식의 집적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주무대신이 소관사업에 대해 축적해 왔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분야 별로 제3자 기관과 각 정부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역할과 권한의 명확화, 집행협력체계 구축 등을 선언하고 있다.⁴⁵⁾

결국, 일본은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제3자 기관을 신설하여 여기에 권한을 집중하되, 권한은 기존 주무대신의 권한에 대한 이양과 조정을 통하여 분할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한이양 후 집행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기관과 주무대신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제3자 기관과 주무대신과의 원활한 집행체계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민간단체

(1) 민간협력 체계 구축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대강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 민간이 자주적으로 대응하여 빅 데이터 관련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44)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2014. 6. 19. 14頁

45)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2014. 6. 19. 14-15頁

① 목 적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의 기본적 틀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이익 침해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명령, 규칙과 가이드라인 및 민간의 자주적 규제에 일임함으로써 빅 데이터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⁴⁶⁾

②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을 사무국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검토회”에서는 2013년 12월 20일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회에서는 이 제도개선 방침을 기초로 2014년 6월 19일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을 승인하였다. 2013년 제도개선 방침과 2014년 제도개선 대강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절차에서 민간참여 방식으로서 멀티스тей크홀더(multistakeholder)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멀티스тей크홀더란 정부, 사업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개방된 절차로 관련 규제 및 규정의 형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빅 데이터 정책에 수반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참여시키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입안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⁴⁷⁾

46)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 2013. 12. 20, 2頁 ;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検討会案), 2014. 6. 19. 12頁

47)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 2013. 12. 20, 2頁 ;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検討会案), 2014. 6. 19. 12頁

(2)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규제 권한 부여

2013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침」과 2014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대강」에 따라 민간단체가 빅 데이터 정책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또 다른 모습은 관련 민간단체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제도개선 방침과 2014년 제도개정대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민간주도의 자주규제규칙제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주규제규칙을 책정하는 민간단체는 빅 데이터 산업과 관련되어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등의 단체로서, 이들은 정부주도로 제정한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자주규제규칙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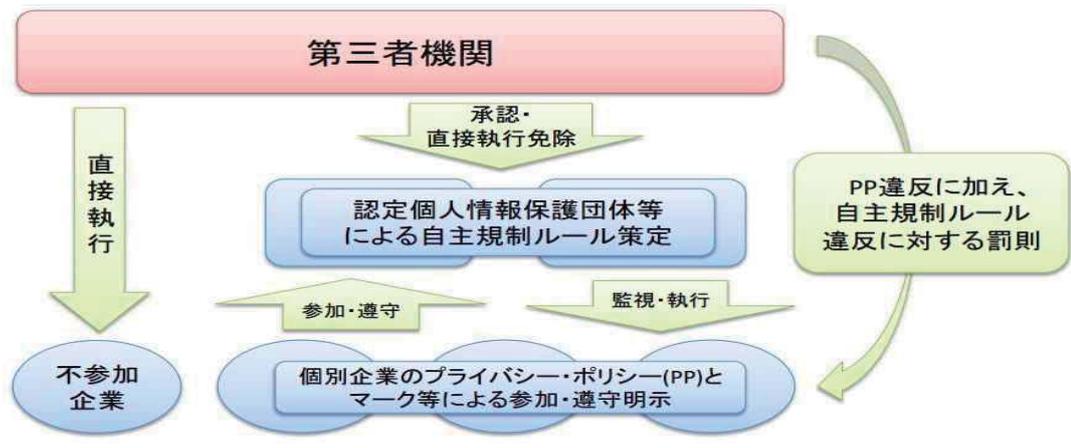
이처럼 민간단체에게 한정적 범위 내에서 자주규제규칙 제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사항,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 입법 기술적 한계로 말미암아 사전입법을 통해 대처하기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주규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보의 성질과 시장구조 등 업계나 분야별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안하므로, 정부입법 또는 정부규제의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한편, 빅 데이터 환경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13년 제도개선 방침과 2014년 제도개선 대강에서는 민간주도의 자주규제규칙의 제정권과 더불어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자주규제규칙의 적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규칙의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원활한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간단체가 국경을 넘어서 정보유통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 상대당사국이 인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수준과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권한도 부여하였다.⁴⁸⁾

이처럼 일본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이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정부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중국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민간단체의 권한들은 모두 제3자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이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제3자 기관과 민간의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규제모델을 채택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⁴⁹⁾

<그림 5> 민간단체와 제3자 기관과의 관계



* 출처: 2014年 1第 2回 Innovation Nippon シンポジウム生貝直人氏講演資料 p.23

48)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 2013. 12. 20, 1-2頁;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検討会案), 2014. 6. 19. 12-13頁.

49) 個人情報保護法改正の動向と今後企業が考えるべきこと, 「企業リスクインフォ」 2014 No. 2, Inter Risk Report No. 14-034, MS&AD, 2014. 9. 4頁.

제 3 장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제

제 1 절 Active Data 전략에 수반된 입법요구

1. 개 요

일본 빅 데이터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는 Active Japan 중 빅 데이터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Active Data 전략은 다중다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해석,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하여 과제 해결에 연계함과 동시에 수집조 엔의 데이터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M2M 시스템 등에 의한 실세계 정보를 개인 정보 등을 배려하면서 부가가치화하고 이를 토대로 ICT와 다른 산업을 연계해서 그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선 2015년까지 현재 매몰되거나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획단적인 이용과 활용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목표에서 우선적으로 법제의 정비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빅데이터 환경정비와 더불어 빅 데이터 활용에 관한 ICT 이용 및 활용을 방해하는 규제·제도개선의 촉진을 또 다른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빅 데이터 환경정비를 위한 법제개선 사항

일본은 빅 데이터 환경정비를 위해 민관의 데이터 개방화 및 공유화를 목표로 하여 이른바 “오픈데이터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오픈데이터 전략은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등에게 산재해 있는 데이터의 개방화, 각종 데이터를 사회전체에서 획단적으로 이용 및 활

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의 2차이용이 가능한 룰(Rule)을 정비하고, 2015년 까지 공통 API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⁵⁰⁾

일본의 오픈데이터 전략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이다. 반면, Active Data 전략은 민간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빅 데이터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빅 데이터 환경정비의 또 다른 축으로 민간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운용 데이터 등을 개인정보 등을 배려하면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지원을 선언하고 있다.⁵¹⁾

3. ICT 이용 및 활용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Active Japan 전략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가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으로서 일본의 ICT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Active Data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2015년까지 빅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ICT 이용 및 활용을 방해하는 규제·제도개혁 촉진이 주된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⁵²⁾

구체적으로는 빅 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한 ICT의 이용 및 활용을 방해하는 각종의 규제와 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IT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향후 정비할 추진체계와 연계해서 민간 니즈(Needs) 찾기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⁵³⁾

50) 總務省,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ICT 戦略, 資料 39-3-2, 2012.7.12., 30頁

51) 總務省, 前掲書, 30頁

52) 總務省, 前掲書, 30頁

53) 總務省, 前掲書, 30頁

4. 추진상황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일본은 Active Data 전략 중 주로 빅 데이터 환경정비를 위한 법제개선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각관방, 총무성 등을 통해 입안된 법제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2014년 4월 1일 내각관방 IT 전략본부에서 제정한 오픈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정부표준규약(제1.0)」과 2014년 7월 31일 오픈 데이터 유통 추진 컨소시엄에서 제정한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가 있다. 다른 한편 내각관방 소속 IT 전략본부에서는 2014년 6월 24일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강은 2015년 이후 추진될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초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입법동향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빅 데이터 환경정비를 위한 기초로서 민간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보유한 운용 데이터 등을 개인정보 등을 배려하면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지원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 등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이 수립되었고, 이어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빅 데이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⁵⁴⁾

이 장에서는 우선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 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와 「정부표준규약(제1.0)」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제4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54) 그 밖에 Active Data 전략에 따라 수반되는 법제개선사항은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다.

제 2 절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

1. 오픈데이터에 관한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일본의 오픈데이터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오픈 거버먼트에서 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2012년 7월 4일에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 전략 본부에서 결정된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을 계기로 오픈 데이터에 관한 대처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6월 14일에 내각차원에서 결정된 「일본 재생전략」과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에서도 오픈 데이터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었다.⁵⁵⁾

한편,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2012년 7월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결정 전부터 일부에서 선행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략의 결정 후에는 오픈 데이터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특히, 지방 공공 단체들은 전용 데이터 포털 등의 오픈 데이터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홈페이지 전체를 오픈 데이터화 하거나(후쿠이 시) 현내 시정촌에서 데이터 형식 등을 통일하는 노력(후쿠이 현)들도 있었다.⁵⁶⁾

(2) 오픈데이터의 목표

일본 국내에서 오픈 데이터가 2012년을 필두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픈 데이터의 목표는 「전자 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2012년

55) http://www.kantei.go.jp/jp/singi/it2/pdf/120704_siryou2.pdf

56) オープン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オープンデータガイド: オープンデータのためのルール・技術の手引き(第1版), 2014. 7. 31. 9-10頁.

7월 4일 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 전략본부 결정)에서 정해졌다. 이 전략에 따르면 오픈데이터의 목표는 “투명성과 신뢰성”, “국민 참여·민관협동 추진”, “경제 활성화·행정 효율화”에 있었다.

이러한 오픈데이터의 목표는 「2차 이용촉진을 위한 부성의 데이터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지침)」(2013년 6월 25일 각 부처 정보화 총괄 책임자(CIO) 연락회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⁵⁷⁾

① 경제 활성화, 새로운 사업의 창출

데이터 수집이나 각종 코드에 의한 데이터의 횡단적 이용이 기계에서 자동으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을 축소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기상, 지질, 교통 기타 관측 조사 데이터와 같은 전문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국민 협동에 의한 공공 서비스(방재·감재 포함)의 실현

여러 행정 기관이나 민간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민간에서도 생활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및 재해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가까운 공공 서비스의 내용, 품질 등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는 재해에 신속하게 여러 정보를 조합 한 정보 발신이 가능해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정책·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 과정, 결정 내용, 결과 등에 대해 횡단으로 검색·분석·비교함으로써 정책의 변화·특징 파악과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평가가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및 정부 지출에 대한 부처, 분야, 지역, 지출 대상 등별로 분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57) 이하의 내용은 二次利用の促進のための府省のデータ公開に関する基本的考え方(ガイドライン)(2013年6月25日各府省情報化統括責任者(CIO)連絡会議決定 참조

2. 오픈데이터 이용규칙

(1) 오픈데이터 이용규칙의 중요성

국가, 지방 공공단체, 독립 행정법인, 공공 기업 등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는 그 표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 데이터를 정보 이용자가 재이용하고 싶을 때 공공 데이터를 작성한 국가, 지방 공공단체 등에 매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⁵⁸⁾

201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보면 공공 데이터의 이용에 있어 무단 변경사용이 금지되지 있어 공공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 국가, 지방 공공단체 등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2차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용 규칙에 의해 명시되면 정보 이용자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재이용 할 수 있게 된다.⁵⁹⁾

즉, 오픈 데이터의 첫 번째 조건으로 “오픈 데이터”는 기계 판독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재이용을 인정하는 이용규칙의 채택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지방 공공단체, 독립 행정법인, 공공기업 등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재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공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둘째, 공공 데이터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 데이터의 재이용이 가능한 규칙을 공개한다.⁶⁰⁾

58)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28頁.

59)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28頁.

60)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29頁.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첫 번째 방안인 “공공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저작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국민, 시민 등의 세금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공공 데이터의 창출 과정에 저작권이 인센티브로 작동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개정(법률처럼 정부가 작성한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이 필요하다.⁶¹⁾

두 번째 방안인 “공공 데이터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도록 한다”의 경우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등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첫 번째 방안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등의 재산 중 하나이며, 「국유재산법」, 「재정법」, 「지방자치법」, 「보조금 등 적정화법」 등과의 관계에서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⁶²⁾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또는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를 “공개”라고 부른다. 데이터가 공개되면 저작권에 의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 데이터에서는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방안과 같이 법 개정이나 「국유재산법」 등의 해석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세 번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³⁾

61)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29頁.

62)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30頁.

63)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30頁.

(2) 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 개념⁶⁴⁾

◦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저작권을 이유로 이용의 제한 수 없다)것을 분명히 한다.

◦ 국가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사용조건에서 공개여부를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재이용을 인정(저작권 이외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약 없이 재이용을 인정)하는 형태로 미리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이 경우 해당 표시는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통일적인 것으로 한다.

◦ 저작권을 근거로 공개 데이터의 일부에 대한 보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컨대, 부수적으로 사용제한을 하는 부분의 저작물에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임을 이미 작성·보유하고 있는 저작물과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아 부수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부수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 책정 후 각 부처가 새로 생성·입수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데이터의 재이용을 인정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자 사이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 책정 후 위탁 용역 계약 검토·체결 등 있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둔 대응(예를 들어, 위탁 연구 계약의 내용과 관련 보고서를 부처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당해

64) 2012년 7월 4일에 결정된 「전자 행정 오픈 데이터 전략」(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 전략본부)는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활용을 촉진 할 것”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행정 오픈 데이터 실무자 회의에서 2013년에 작성된 「재이용 촉진을 위한 부성의 데이터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지침)」에서는 재이용을 촉진하기 이용 규칙에 대해 기본개념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二次利用の促進のための府省のデータ公開に関する基本的考え方 (ガイドライン) (2013年6月25日 各府省情報化統括責任者 (C I O) 連絡会議決定) 참조).

공개 데이터의 재이용을 인정하고 재이용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저작권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공개 데이터의 재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그 내용과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해당 표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통일적인 것으로 한다.

◦ 각 부처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2차 이용하여 해당 재이용된 데이터를 이용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 부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1) 제정연혁

오픈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오픈데이터 유통 추진 컨소시엄의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총무성의 정보통신백서 등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픈 데이터 대응의 이용규칙을 작성했으며, 2013년도에는 「전자 행정 오픈 데이터 추진을 위한 로드맵」(2013년 6월 14일 IT 종합전략본부 결정)에서 2013년도 하반기까지 검토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이용규칙의 재검토(재이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개별적으로 표시)」에 대해 2013년 11월에 내각관방 IT 종합 전략실의 의뢰를 받아 지침의 방침에 따라 「각 부처 홈페이지 이용 규칙 검토(초안)」를 검토했다.⁶⁵⁾

65) 일본은 외국에서 주로 운용하는 CC0 또는 CC-BY방식의 이용규칙보다 CC-BY 또는 정부표준 이용규약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다. 본래 CC0에 앞서 CC라는 운영방식이 있었는데, 이는 라이선스 옵션을 제공하는 있는 국제비영리 조직과 프로젝트의 총칭으로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규칙의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작품의 저자가 스스로 “이 조건을 지키면 내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해 좋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한 도구이다. CC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저자는 저작권을 유지

그 결과는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실무자 회의 규칙·보급 WG(2014년 1월 17일 개최)에 제언되었고, 전자행정 오픈 데이터 실무자 회의에서는 이 제언을 바탕으로 2014년 4월 1일 「정부표준 이용규약(안)」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19일에 각 부처 정보화 총괄책임자(CIO) 연락회의에서는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을 최종 승인하였다.⁶⁶⁾

한편,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은 각국에서 채택된 이용규칙과 다른 이용규칙을 담고 있다. 이는 이 규약의 적용으로 해외의 정보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의 기본적인 이용조건은 CC-BY와 같이 출처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많은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다. 그 결과, 「법령, 조례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용」 및 「국가·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바로 이 점에 CC-BY와는 다른 이용규칙이 제정되었던 배경이었다.⁶⁷⁾

하면서 작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고, 수령인은 이용규칙이 정하는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배포 및 자유로운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체계이다. CC-BY는 CC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이나 데이터에 대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공개하자는 시도이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저작권을 전제로 “이용허락”을 하는 반면 CC0는 ① 저작권을 포기하고 ② 포기 할 수 없는 권리는 무조건 영구 이용허락을 수행하고, ③ 이용허락도 무효인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CC-BY는 CC 라이선스에서 이용계약이 가장 적은 이용규칙에 기본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각국은 그 나라의 법제도에 맞게 이용규칙을 제정·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버전 4.0을 기초로 국제적으로 동일한 이용규칙을 공통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버전 4.0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버전 2.1이 이용되고 있다. CC, CC0, CC-BY 방식에 따른 이용규칙의 전문은 *オープン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38-56頁* 참조

66) *オープン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33頁*; 한편,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은 2015년도에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때 이용규칙에 관한 「정부 표준 이용규약(제 1.0)」의 사항에 대한 변경 후 콘텐츠의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지사항의 필요성 검토도 포함해 검토 할 예정이다.

67) *オープン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35-36頁*

(2) 정부표준 이용규약의 주요내용

① 전체구성 및 기본방향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은 각 부처 홈페이지 이용규칙의 재검토에 대해 「2차 이용 촉진을 위한 부성의 데이터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2013년 6년 25일 각 부처 정보화 총괄책임자(CIO) 연합회의 결정)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국가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외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2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약 없이 재이용을 인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해당 표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알기 쉽고 통일적인 것으로 한다”고 선언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⁶⁸⁾

한편, 검토 과정에서 부처에서는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다양성, 일률적인 재이용의 곤란성,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각 부처에서 별도의 이용 조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국가의 콘텐츠를 편집 가공하여 만든 정보를 국가가 해당 정보를 작성했다고 속이는 것에 대한 불인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은 “지침”을 근거로 일반 이용자에게 알기 쉬운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되, 기본적인 이용조건은 CC-BY와 같이 출처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기된 의견에 입각하여 국가의 많은 콘텐츠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⁹⁾

또한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 된 내용 중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의 통일규칙(제1 규칙)이 적용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처가 해당 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이용규칙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허용하

68) 内閣官房 I T総合戦略室, 「政府標準利用規約 (第1.0版) 」の解説 2014. 6. 19., 1頁

69) 内閣官房 I T総合戦略室, 前掲書, 1-2頁

고 있다.⁷⁰⁾ 그리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규약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규약에 대한 링크가 명료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이용규약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각 부처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¹⁾

그리고 향후 이용규칙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규칙 초안에 이름을 붙이고 해당 버전을 기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이라는 명칭을 붙였다.⁷²⁾

① 홈페이지 콘텐츠 이용

1. 당 홈페이지의 콘텐츠 이용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이하 “콘텐츠”라 한다)를 다른 이용규칙이 적용되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누구나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복제, 공중송신, 번역·변형 등의 번안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상용이용도 가능하다.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는 본 이용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홈페이지」는 “웹 사이트”, “사이트” 등 각 부처에 따라 적절히 표현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의 통일적인 규칙으로 “2. 다른 이용규칙이 적용되는 콘텐츠 정보”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제외한 콘텐츠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특히 이하 1) ~ 5)로 표시된 조건에 따라 복제, 공중송신, 번역·변형 등의 번안 등 자유로운 이용이 허락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70) 그러나 “지침”에서 선언한 대로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이용제약을 부과하거나, 다른 이용규칙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다른 이용 규칙을 마련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71) 內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2頁

72) 內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2頁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의 채택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부성(시설 등 기관, 지방 지분 부국 등 부처에 속하는 조직을 포함)이 그 명칭에서 개설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개별 업무사이트 등을 널리 포함 것이고, “홈페이지”라는 문언은 “웹사이트”, “사이트”등 각 부처에 따라 적절히 적당한 문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⁷³⁾

또한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규칙 경계선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는 본 이용규칙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성이 없는 내용(수치데이터, 도표, 간단한 그래프 등)은 「저작권법」상 누구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에서 대하여「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 판)」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은 기본적으로 출처 기재를 하면 자유로운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며, 저작물성 없는 콘텐츠에 적용하여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와 연관되지 않는 것, 저작물성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저작물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도 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식별의 곤란성이 노정되어 있지만, 이의 일률적 적용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없는 내용도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⁷⁴⁾

그러나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콘텐츠에 대하여 본 이용 규칙은 저작권의 이용허락으로서의 측면을 갖는 반면, 저작물성이 없는 콘텐츠 등 국가에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에 대해서 본 이용규칙은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⁷⁵⁾

73)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3頁

74)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3頁

75)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3-4頁

② 출처의 기재

1) 출처의 기재

컨텐츠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 기재 예>

- 출처 : A 성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의 URL)
- 출처 : 「○○ 동향 조사」(A 성) (해당 페이지의 URL) (○ 년 ○ 월 ○ 일 이용) 등

이 컨텐츠를 편집·가공 등을 이용하는 경우 위 출처와는 별도로 편집·가공 등을 한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가공 한 정보를 마치 국가(또는 부처 등)가 만든 것 같은 형태로 공표·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컨텐츠를 편집·가공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기재 예>

- 「○○ 동향 조사」(A 성) (해당 페이지의 URL)을 가공하여 만든
- 「○○ 동향 조사」(A 성) (해당 페이지의 URL)을 바탕으로 ○○ 주식회사 만들기 등

컨텐츠를 사용하는 자는 출처의 명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출처의 기재방법을 나타내야 한다. 출처의 기재방법은 반드시 통일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기가 있으면 상호 차별화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가 출처의 기재 예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출처를 기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⁶⁾

이용자가 공공 데이터를 대상으로 편집·가공 등의 2차 이용을 한 경우에는 편집·가공 등을 했다는 것을 기재 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편집·가공된 정보가 마치 국가·부처가 만든 자료인 것처럼 공표·

76)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4頁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부처가 작성한 통계 수치를 조작한 다음, 해당 부처가 공개한 것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⁷⁷⁾

한편, 기본적인 이용조건을 CC-BY와 같이 출처의 기재로 하면서도 CC-BY와는 다른 규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 때문이다. 첫째, 콘텐츠에 대하여 편집·가공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 공서 양속에 반하는 등 각 부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용은 인정하지 않는 등 콘텐츠를 게시하는 부처의 판단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둘째, CC-BY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지만, 저작물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결정해야 조건이나 조항이 존재한다. 셋째, CC-BY 라이선스 문의를 CC-BY 방식에 의하여 허가된 내용을 재배포하거나 다른 콘텐츠와 결합할 때 저작권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알기 쉬운 이용 규칙을 정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조건을 채택하지 않았다.⁷⁸⁾

③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

2) 제3자의 권리침해 금지

콘텐츠 중에 제3자(국가 이외의 자를 의미함)가 저작권 기타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즉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제3자가 저작권 이외의 권리(예: 사진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권리처리를 받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콘텐츠 중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출처표기 등에 의해 제3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시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명확하게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특정

77)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4頁

78)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5頁

· 명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의 책임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삼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표시·시사하는 경우 예> [별지에 기재]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출처의 규약에 따른다.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API 연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의 예> [별지에 기재]

※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자가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도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중에는 국가 이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의 대부분은 오픈 데이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부처)가 제3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또한 2차 이용에 대한 권리처리하지 않은 것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 규약에서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 특히 권리처리가 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⁷⁹⁾

게다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각 부처가 망라적으로 파악하고 표기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인지 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임을 시사·표시·기재·예 등을 별지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도록 하고 있다.

79)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5頁

또한 이용자로부터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⁸⁰⁾

한편, 부처 홈페이지에서 창에서 SNS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등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API 연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 출처의 표기 등과 관련하여 이 이용규약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다.⁸¹⁾

④ 이용의 금지

3) 이용의 금지

- 콘텐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가) 법령, 조례 또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이용
- (나) 국가·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용

이 항목은 콘텐츠의 공개 주체인 국가(부처)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용양태를 정하고, 본 이용규칙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용 또는 사용을 한 경우에는 그 이용허락이 취소된다.

본 규정은 지도, 해도, 항공도, 경보·예보, 방재정보 등 국가·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며, 이용형태에 따라 국가·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령, 조례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규약 전 체계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국가의 많은 콘텐츠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⁸²⁾

80)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6頁
 81)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6頁
 82)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6頁

이와 더불어 “공서 양속에 반하는 이용”에는 범죄에 관련된 것, 인륜(혼인 질서·성 도덕)에 반하는 것, 도박 또는 위협하는 것, 사람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폭리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조장하는 이용, 외설 또는 위협적인 이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⁸³⁾

⑤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제한

4)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는 콘텐츠

일부 내용은 개별 법령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다음에 기재하는 법령은 유의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링크 페이지를 참조한다.

- ○○ 법(개별법 이름)에 근거 ○○(내용 이름)의 이용에 해당하는 ○○(제약 사항)에 대해 (→ 해당 페이지에 링크)
- △△ 법(개별법 이름)에 근거 △△(내용 이름)의 이용에 해당하는 △△(제약 사항)에 대해 (→ 해당 페이지에 링크)

※ 특히 기재해야 할 개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삭제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 이용 제한이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지도(기본 측량의 측량 성과)는 「측량법」에 따라 복제·배포와 일정한 형태의 2차 이용에 대하여 국토지리원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은 본 이용규칙에서 변경할 수 없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제한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에게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⁴⁾

83) 內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6-7頁

84) 內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7頁

⑥ 준거법과 관할

5) 준거법과 관할

이 이용규칙은 일본법에 따라 해석된다.
이 이용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이용과 본 이용규칙에 관한 분쟁은 분쟁에 관한 내용이나 이용규칙을 발표하는 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이 한다.

여기에서는 본 이용규칙 준거법이 일본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본 이용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이용 및 본 이용규칙에 관한 콘텐츠 제공 부처 또는 콘텐츠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분쟁은 콘텐츠의 제공 주체인 각 부처와 내용 이용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⁸⁵⁾

⑦ 면책

6) 면책

국가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사용하여 수행한 일체의 행위(콘텐츠를 편집·가공 등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 이전, 삭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항목은 콘텐츠 제공자의 면책 조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의 이용형태는 다양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여 할 어떤 행동에 대하여 공개 주체인 국가(부처)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정확성 등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

85)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7-8頁

우, 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국가(부처)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다.⁸⁶⁾

⑧ 기타

7) 기타

이 이용규칙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인용 등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이용규칙은 2014년 ○월 ○일에 정한 것이다. 본 이용규칙은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을 준수하고 있다. 본 이용규칙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이용규칙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항목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의 권리제한 규정(제30조~제47조의9)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이 이용규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권리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보도, 비평, 연구 기타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인용, 학교 및 기타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수업 과정에서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의 복제 등이 있다(행위는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여 “그 복제 또는 이용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⁸⁷⁾ 한편, 이 규약은 2015년을 기준으로 재검토형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86)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8頁

87) 内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8-9頁

⑨ 다른 이용규칙이 적용되는 콘텐츠와의 관계

2. 다른 이용규칙이 적용되는 콘텐츠

다음의 내용은 이 이용규칙 외의 다른 이용규칙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된 페이지를 참조한다.

- xx(내용 이름)의 이용에 대해 (→ 해당 페이지에 링크)

※ 개별 법령에 근거 없는 이용제한을 부과하고 다른 이용규칙을 마련하는 경우 각 부처는 다른 이용규칙을 마련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위 링크 페이지에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삭제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제한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의 통일규칙(1. 규칙)과는 다른 이용규약(다른 이용규칙)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 항목에서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해당 콘텐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방문 페이지에서 다른 이용규칙의 내용과 같은 이용제약을 부과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⁸⁸⁾

또한 제1 규칙 이상의 이용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1 규칙과는 다른 이용규칙으로, CC-BY나 CC0를 적용하여 공개할 콘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이 항목에서 CC-BY 나 CC0을 적용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표시되는 방법으로는 “CC-BY 마크를 표시하고 있는 콘텐츠”라는 형태도 가능하다.⁸⁹⁾

제2 규칙에서 다른 이용 규칙이 적용되는 콘텐츠로 기재한 콘텐츠는 제1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제1 규칙

88) 内閣官房 I T総合戦略室, 前掲書, 10頁

89) 内閣官房 I T総合戦略室, 前掲書, 10頁

4), 5)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제한과 준거법 및 관할에 관한 사항을 다른 이용규칙 중에서도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다른 이용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범위나 다른 이용규칙의 내용은 내용변경, 이용환경·이용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⁹⁰⁾

⑩ 각 부처의 재량사항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링크, 개인정보보호 정책, 접근성 및 면책조항(컨텐츠 이용에 관한 것을 제외)은 위의 컨텐츠 이용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한 각 부처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은 컨텐츠 이용에 관한 규칙(현재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면책조항” 등으로 기재되어있는 사항)을 참고로 규정한 것이다. 실제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링크, 개인정보보호 정책, 접근성 및 면책조항(컨텐츠 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별로 그 구성과 내용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일성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의 컨텐츠 이용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한 각 부처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⁹¹⁾

(3) 오픈 데이터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① 오픈 데이터와 개별 이용규칙의 상관성 고려

이용자의 관점(오픈 데이터 이용)에서 보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데이터(숫자, 간단한 표·그래프 등)는 CC0를, 저작권이 발생하는 공공데이터는 CC-BY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90) 內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10頁

91) 內閣官房 I T 総合戦略室, 前掲書, 10-11頁

CC0 또는 CC-BY를 적용 할 때, 해당 규약을 이해하고 CC0 또는 CC-BY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사용해야한다. 또한 저작권이 발생하는 공공데이터에 CC0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작권 포기 여부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다.⁹²⁾

한편, 종래의 공공데이터의 이용규칙에 자주 이용되어 왔던 “법령·조례·공서 양속에 반하는 이용”과 “국가·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용”의 금지를 오픈 데이터 이용규칙에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 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실효성에 문제가 오히려 데이터를 이용할 때의 위축 효과에 의한 영향력 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금지하려는 행위 등이 없이 예방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⁹³⁾

다음으로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대중적 활용도가 높은 CC-BY와의 호환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은 향후 이용 상황을 보고 재검토가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⁹⁴⁾

공공데이터를 오픈 데이터로 활용할 때,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준별하고 CC-BY 등의 이용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쉽게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 준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이용자의 책임으로 타사에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를 이용할 때 법령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제한의 내용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보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

92)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70頁.

93)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70頁.

94)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71頁.

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데이터 카탈로그 사이트 시도판 「DATA.GO.JP」이용규약이 이용규칙으로 CC-BY를 적용하면서 타사 권리에 관하여 주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⁵⁾

다만, 제3자 권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주지의 필요성 때문에 CC-BY 대신 「정부표준 이용규약(제 1.0)」을 채택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이용범위를 좁히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⁹⁶⁾

② 공개된 데이터의 악용과 책임

공개된 데이터가 늘어나면 그 이용도 당연히 증가한다. 따라서 오픈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의 악용 기회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오픈 데이터 정책이 진행되어 온 것은 공개된 데이터의 악용에 따른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장점이 오픈 데이터에 있기 때문이다.⁹⁷⁾

기본적으로 일단 공개된 데이터는 정보제공자가 그 사용을 제어하고 악용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용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일 그런 금지조항을 마련하더라도 데이터를 악용하려고 하는 자가 당해 이용규칙을 이해한 후 악용 가능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⁹⁸⁾

따라서 공개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위험한 결과(위험물의 제조 등)를 내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험이 현실화 한 경우, 정보제공자는 비판을 받을

95) 다만, 데이터 카탈로그 사이트 시도 판 「DATA.GO.JP」이용 규약은 개별 법령에 대한 제약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이나 근거 법령까지 기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추가 할 필요가 있다.

96)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70頁.

97)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72頁.

98) 오픈데이터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前掲書, 72頁.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정도 없는데 사실상의 인과관계에서만 ‘악용에 활용한 데이터를 공개 한 정보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⁹⁹⁾

오픈 데이터에서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정보이용자 일반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의해 책임을 부과한다면, 정보제공자로는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데이터 악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평가에 접하면 정보제공자는 당연히 데이터의 공개를 억제 하게 된다.¹⁰⁰⁾

③ 제3자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고려사항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용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의 대응방법은 첫째, 정보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부수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을 경우, 정보제공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부분을 재이용 대상에서 제외로 준별하여 명시한다. 이는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보제공자가 타사에서 사용권의 취득과 제외 부분을 준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출처표기 등에 의해 제3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시사한 후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정보이용자의 책임으로 타사에서 사용권을 얻어야 함을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¹⁾

한편 제3자로부터 부수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CC0나 CC-BY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준별이 가능하고 재이용의

99) 오픈데이터流通推進콘소시엄, 前掲書, 72頁.

100) 오픈데이터流通推進콘소시엄, 前掲書, 72頁.

101) 오픈데이터流通推進콘소시엄, 前掲書, 73頁; http://www.kantei.go.jp/jp/singi/it2/densi/kettei/gl_honbun.pdf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는 CC0나 CC-BY에서 제공 가능하다. 하지만, 출처표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제3자의 권리소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CC-BY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주의를 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 데이터 카탈로그 사이트 시도 판 「DATA.GO.JP」의 이용 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²⁾

102) http://www.kantei.go.jp/jp/singi/it2/densi/kettei/gl_honbun.pdf; <http://www.kantei.go.jp/jp/singi/it2/densi/dai3/siryou3.pdf>

제 4 장 빅 데이터 정책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제 1 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연혁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1975년 도쿄도의 구니차치시이 프라이버시보호 조례가 제정되고, 사회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과 「개인정보에 관련된 범포터규제법안」등을 필두로 제정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1980년 OECD에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1년 행정관리청에 프라이버시보호연구회를 설치하고, 1982년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1988년 12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199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총 3차례 개정과정이 있었다.¹⁰³⁾

한편, 일본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히 IT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이 있어왔다. 그러나 IT기반 사회이면에는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어 병폐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¹⁰⁴⁾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제기되었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103) 당시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능의 집중화(총무대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통제 장치 미흡, 개인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미흡, 개인정보 이용 제한에 대한 광범성 처벌규정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었다(UNCTAD, “Japan Adopt Privacy Protection Act,” Trade and Development Report(TDR), 1989, pp.25)

104)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논의되던 즈음에, 전기통신업 대리점이 고객정보 3만건을 유출한 사례, 출판사홈페이지에서 1만6천건의 고객정보가 열람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사례(이상 2000년), 백화점에서 고객정책부의 직원이 38만2천건의 카드회원명부를 신용조사회사에 판매한 사례, 신용카드회사가 청구서 1만3천건을 회원에게 잘못 발송한 사례(이상 2001년), 식품제조회사 홈페이지에서 현상광고 응모자

에 모두 적용할 기본법 제정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결과 2000년에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대한 대강」이 공포되었다.¹⁰⁵⁾

그리고 이 대강을 기초로 2001년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2002년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안)」,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다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심의되었는데, 이 법안들은 2002년 12월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다.

이후 여당에서는 수정안이 마련되어 2003년 이 법안에 대한 입법화논의가 재추진되었고, 2003년 5월 23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심사회설치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5월 30일 공포되었다. 이로서 일본은 2003년부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 5대 입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¹⁰⁶⁾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의 지위와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¹⁰⁷⁾

4만5천 건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유출된 사례, 증권회사의 고객 데이터(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식·채권 등의 자산액 등) 1만1천 건이 명부판매업자에게 유출된 사례(이상 2002년) 등이 있었다.

10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상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동향, 「해외정보보호동향」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13면 이하; 황상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동향, 「법제」, 법제처, 2003, 67면 이하 참조.

106) 개별법령에 대한 입법의의에 대해서는 高芝利仁, 個人情報保護法の全面施行に向けての意義と課題, ジュリスト 1287號, 2005, 30頁 以下

107) 岡村久道, 新法解説 個人情報保護法入門, 商事法務, 2003, 71頁; 최근 일본의 빅

<그림 6>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출처 : <http://www.caa.go.jp/seikatsu/kojin/houtaikei.pdf#sthash.6qg7zinn.dpuf>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기본체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이라 한다)은 2003년 5월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지만, 당시에는 일부만 시행되었고, 2005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등, 제4장

데이터 정책에 기반하여 제정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심사회설치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등 총 6개 장, 5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존중의 이념 하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적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동법의 기본 이념이 명기되어 있다(제3조).

제4장에서 제6장은 민간부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모든 사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분야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는 각 사업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성격,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그 분야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¹⁰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이나 국립대학법인 등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이에 해당한다.¹⁰⁹⁾

2.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른

108)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는 의료, 금융 등 총 24개분야 37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개별 사업분야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385-391면 참조.

109)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개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백문흠/전혜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2012년도 통합 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16면 이하 참조.

정보와 쉽게 대조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제2조 제1항).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 관한 정보나 법인에 관련된 정보(예를 들면, 기업명이나 기업의 자본금과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반면 영상이나 음성도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개인데이터」라 한다(제2조 제4항).

3.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4장부터 제6장(이하 ‘의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전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규정의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의 민간사업자를 「개인정보취급사업자」라고 하는바, 5,000명을 초과하는 개인정보를 종이매체 또는 전자매체를 막론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단, 사적인 목적으로 연하장을 보내기 위해 개인PC로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경우 등은 의무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법이 개인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데이터처리의 형태로서 ‘자동적’처리와 ‘비자동적’ 즉 ‘수동적’처리(또는 매뉴얼처리라고 부르고 있다)와의 2종류로 대별된다. ‘자동적’처리는 ‘전자적’처리라는 점에서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중심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기계적’처리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매뉴얼처리’라는 것은 개인데이터가 종이 파일에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손으로 그들 파일을 조작하면서 데이터처리를 하는 것이다. 법률은 이 양쪽의 데이터베이스 모두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명함류가 난잡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는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함류가 어떠한 질서에 따라 축적되어 있고 누구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이라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¹¹⁰⁾

한편, 일본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과의 관계조정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라 하더라도, ① 보도기관의 보도활동 ② 저술활동을 업으로 삼는 자의 저술활동 ③ 학술연구기관 등의 학술연구활동 ④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⑤ 정치단체의 정치활동 등 다섯 부문 주체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는 위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0조, 제35조).

4.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1)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특정(제15조) 및 목적 외 이용의 금지(제16조)

개인정보 취급시에는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특정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2) 적정한 취득(제17조), 취득에 있어서의 이용목적의 통지 등(제18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신속하게 이용 목적을 통지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에게서 직접 서면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에게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110) 慶應義塾大學法學部, 慶應法律學 公法Ⅱ-慶應義塾創立150年記念法學部論文集,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2008. 150頁 以下

(3) 개인정보 내용의 정확성의 확보(제19조)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확하고도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입력시 대조·확인, 기록 사항의 갱신, 보존 기간의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조치(제20조)

개인데이터의 누설이나 손실을 막기 위해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의 예로는 보안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관리자의 임명, 내부관계자의 접근 관리, 시스템·기기 등의 정비나 사업자 내부의 책임체제의 확보 등이 있다.

(5) 종업원 및 위탁 상대에 대한 감독(제21조, 제22조)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업원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의 예로는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위탁계약서 명기, 재위탁시의 감독 책임 명확화 등이 있다.

(6) 제3자 제공의 제한(제23조)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법령에 의한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회가 있었을 경우 등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 대규모 재해나 사고 등의 긴급시 환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환자의 정보제공 의뢰가 있는 경우 등

◦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보건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의료기관에 암진료 정보 제공 의뢰가 있는 경우 등

◦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무서 등으로부터 사업자에 대해 고객정보 제공 의뢰가 있었을 경우, 위탁의 경우, 합병 등의 경우 및 특정한 사람과의 공동이용의 경우로서 일정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이용목적의 통지 및 개인정보의 개시, 정정, 이용정지 등(제24조 내지 제27조)

보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공개 등에 필요한 절차, 불만사항 접수처 등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 개인정보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정정 등을 하여야 한다.

(8) 불만사항의 처리(제31조)

본인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만사항 접수 창구의 설치 등 체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5.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징

(1) 법 적용 대상의 이원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통합법체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각각의 특성을 인정한 개별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법적 성격과 기본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본법과 민간부문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인정하는 다소 특이한 법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기본법상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및 시책, 기본방침 등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국가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한 특별규율사항은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내에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공공 민간 양 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이 확보되도록 제4장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조치뿐만 아니라 제2장 및 제3장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 기본방침의 작성 기타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 여러나라의 법률과 같이 사전 등록·신청 등에 의하여 사업자를 행정기관에 의한 강력한 감독하에 두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취급을 존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무대신의 보고징수, 조언, 권고, 명령의 사후적인 관여를 통하여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국가의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 분야에 특성을 고려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고충처리의 다원화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취급사업자,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 주무대신에게 그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고충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노력 하여야 하며(제.31조),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요청에 대하여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그 상담에 응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며 고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과 함께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고충의 내용을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제42조.)

아울러 주무대신은 정보주체의 권리의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34조).

이렇듯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에 대하여 일원화 된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고충을 처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절차의 다양화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¹¹¹⁾

(3) 감독기구의 이원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법률에 의한 정부규제보다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율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11) 宇賀克也・七條浩二・萩原まき子・藤原靜雄, 個人情報保護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1367號, 2008, 79頁 以下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집행기관으로서 독립된 포괄적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각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소관사업의 주무장관이 직접 집행 및 감독책임 지도를 하고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로서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의 지정을 통해 사업자 단체를 통한 자율 규제적 요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는 그 규제대상 사업자를 향해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인정업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대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현행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무대신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4) 국제적 기준의 수용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EU가 1995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¹¹²⁾, OECD 가이드라인 제8원칙 등 국제적 기준을 적절히 국내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OECD가 제시한 8대 원칙, 즉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정보내용의 정확성 원칙, ③ 수집목 명확화 원칙, ④ 이용제한의 원칙, ⑤ 안전확보의 원칙, ⑥ 공개의 원칙, ⑦ 개인 참가의 원칙, ⑧ 책임의 원칙이 잘 수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OECD 8대 원칙의 수용내용

OECD 8대 원칙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수집제한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금지(제 17조)

112) Directive 95/46/EC

제 4 장 빅 데이터 정책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OECD 8대 원칙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를 얻어 개인정보수집 ▪ 민간정보의 수집제한 	
정보 내용의 정확성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을 유지하도록 노력(제19조)
수집목적 명확화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이전 도는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명시 ▪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목적의 특정(제15조)
이용제한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외 이용 및 공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정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취급 금지(제16조) ▪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제23조)
안전확보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 강구(제20조) ▪ 종업원, 수탁자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감독조치(제21조, 제22조)
공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개 ▪ 개인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존재사실, 이용목적 등에 대한 접근 용이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이용목적의 통지 또는 공표(제18조) ▪ 이용목적 등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및 유지(제24조)

OECD 8대 원칙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참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 보장 ▪ 정보주체가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인정(제25조) ▪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정정 등의 조치(제26조) ▪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용정지 등의 조치 강구(제27조)
책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원칙 준수 의무 및 책임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불만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의무(제31조)

출처 : 황종성,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 75-76면; www.kantei.go.jp.

(5)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여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간단히 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 성명이나 생년월일은 물론이거니와 근무처, 주소, 전화번호, 학력, 병력, 결혼여부, 체격, 혈액형 등 여러 가지 개인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비록 어느 하나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에는 사자(死者)는 포함되지 않는다.¹¹³⁾

113) 김진홍/김정순, 일본 개인정보호 관련법의 쟁점과 전망, 『언론과 법』 제2호, 한국 언론법학회, 2003, 267면.

한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제2조제2항을 보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조제4항에서는 ‘개인데이터’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조제3호에서는 ‘보유 개인데이터’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공개,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 이용의 정지, 소거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정지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6) 국가 등의 책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이다. 우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이기 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정하고 있는 선언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에게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과 엄격한 실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상의 조치의무(제6조), 국가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시행의무(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각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무(제12조) 등과 같은 의무를 명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가 등의 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7)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사업자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5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사업에서 사용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3항). 이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5조 이하).

-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그 이용목적은 가능한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이용목적의 특정).
-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이용목적의 제한).
-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적정한 취득).
-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그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취득시 이용목적의 통지)
- 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데이터를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
- 축적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출되거나, 데이터를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안전관리 조치).
-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사업자는 담당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취급 종업원에 대한 감독)
- 개인데이터의 취급을 외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처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위탁처에 대한 감독).
-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한 : opt-in 방식의 관리).
- 보유하는 개인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보유 개인데이터에 대한 공표)
-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개인데이터 이용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 통지)

-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해 그 개인정보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공개)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이용정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정정, 이용 제한).

한편,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에서는 보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규정이 제외되는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 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저술활동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대학이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8) 실효성 담보 수단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정 개인정보보호단체에 의한 고충처리(제37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주무대신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보고명령 및 조언권(제32조 및 제33조), 개인에게 중대한 권리의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대신의 권고조치명령권 및 긴급조치권(제34조), 주무대신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인정취소권, 그 밖의 벌칙(제56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 3 절 2013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침

1. 제정연혁

일본정부가 세계최첨단의 IT국가를 지향하며 IT전략본부를 설치한 것은 2001년이었으나 전략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이러한 전략실패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반성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 6월 결정된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이하 “국가창조선언”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국가창조선언에서는 첫째, IT와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은 글로벌경쟁에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략적인 이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와 혁신적인 신산업과 서비스의 창출, 둘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통해 민간의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및 기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셋째, 공공이익에도 이바지하는 환경정비 등을 밝히고 있다.¹¹⁴⁾

이후 일본정부는 2013년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을 사무국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검토회(이하 “검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2013년 12월 20일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이하 “제도개선방침”이라고 한다)」을 결정하였다.¹¹⁵⁾ 그리고 검토회는 소비자청의 담당자를 추가하여 내각관방 내에 강화된 체제를 구축하였다.

114) 「世界最先端 IT 國家創造」宣言, 資料 2-1, 1頁.

115)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검토회는 위의 제도개선방침을 기초로 하여 2014년 6월 19일 「개인 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이하 “제도개정대강”이라고 한다)」을 승인하였다.¹¹⁶⁾ 그리고 2014년 7월부터는 의견제출(public comment)을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 제도개선 방침의 제정취지

(1)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제정되어 10년이 지났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이른바 ‘빅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신사업 및 서비스의 창출과 일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크게 공헌하는 등, 국가발전의 이노베이션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당시에는 상정하지 못했던 이용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회적인 상황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¹¹⁷⁾

그 중에서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의무를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¹¹⁸⁾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련한 규정들의 애매함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주저하는 사례도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116)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平成26年6月19日

117)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18) 일본에서는 일찍이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의 하나로 보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였고, 이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익이 무엇인지 현행법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국제적 조화의 추진

기업활동이 글로벌화되어 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유통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에도 세계의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정보이용 및 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정비되는 제도들에 맞추어 일본의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¹¹⁹⁾

3.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방향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의 모호성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방침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1)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개념도입 및 사업자의 의무규정 강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특정될 가능성을 낮춘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영향 및 본인동의 원칙에 유의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제공자 및 수령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강구한다.¹²⁰⁾

119)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20)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2) 제3자 제공의 예외조치 등의 명확화

공동이용과 옵트 아웃(opt-out) 등 제3자 제공의 예외조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용목적 확대의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프라이버시정책을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취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¹²¹⁾

(3) 프라이버시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적절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개시 및 정정(추가 및 삭제를 포함) 등에 있어서 본인의 권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취급,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도입, 정보취득 시의 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¹²²⁾

그리고 전문적지식의 집중화, 기동성 있는 법집행의 확보 및 외국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을 갖추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제3자기관)에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벌칙의 마련, 법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¹²³⁾

또한 위의 대응과 함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를 효과적으로 기능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응방안을 평가해서 충분히 규율에 따를 것을 담보한다. 이와

121)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22)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23)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함께 “멀티스тей크홀더(Multistakeholder)”의 개념을 활용한 민간주도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련한 규제가 준수되는 제도를 정비한다.¹²⁴⁾

(4) 세계화에 대응하는 개선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은 세계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고, 일본의 사업자가 세계화에 따른 적절한 개인정보의 공유, 이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와 국제사회의 현상을 고려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검토하면서 다른 나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때의 확실한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¹²⁵⁾

또한 국경을 초월한 정보유통 실태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¹²⁶⁾

124)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25)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에 의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유통이 매우 용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2013년 7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2012년 2월에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공표하였고, EU에서도 2014년 3월에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계속 검토되는 등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토론과 법제정비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The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2013 참조. 미국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자세한 내용은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2014 참조. EU의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2 March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4 참조.

126)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4. 제도개선방침의 구체적인 내용

(1) 제3자 기관(privacy commissioner)의 체제정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을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독립적인 기관인 제3자 기관에 의한 통일적인 견해의 제시, 사전상담, 고충처리, 입회검사, 행정처분의 실시 등의 대응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¹²⁷⁾

(2) 개인정보 개념의 정립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배려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낮춘 정보에 관해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영향 및 본인동의 원칙에 유의하면서 제3자 제공에서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유형을 도입하고, 당해 유형에 속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제공자 및 수령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¹²⁸⁾

(3)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외국제도와와의 조화

외국의 제도와 국제사회의 현상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규제를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조화를 갖춘 제도를 구축하여 일본기업이 원활하고 세계적으로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환경을

127)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28)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정비하면서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의 적용과 제3자 기관에 의한 국제적인 집행협력 등의 실현에 대해서 검토한다.¹²⁹⁾

② 외국으로의 월경이전 제한

글로벌한 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저해하지 않는 것과 프라이버시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다른 국가로의 정보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¹³⁰⁾

③ 개시, 삭제 등의 올바른 형태

본인자신의 정보에 대해 걱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본인의 불안감을 없애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취득한 개인정보의 본인에 의한 개시, 정정(추가 및 삭제를 포함), 이용정지(소거 또는 제공의 정지를 포함) 등의 청구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검토한다.¹³¹⁾

④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규정준수를 위한 제도구축

제3자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며,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정보의 이용 및 활용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적정한 벌칙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제도를 정비한다.¹³²⁾

129)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30)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31)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32)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⑤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취급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취급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닌 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현행제도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사업자(취급하는 개인정보가 5,000명 미만인 사업자)의 요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¹³³⁾

⑥ 행정기관, 독립행정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취급

행정기관, 독립행정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등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취급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 제3자 기관의 기능, 권한 등에 관한 국제적인 정합성,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며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한다.¹³⁴⁾

(4) 프라이버시보호 등을 배려한 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위한 사항

① 개인정보보호 목적의 명확화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용 및 활용의 공익성이라는 관점도 고려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한다.¹³⁵⁾

133)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34)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35)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②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위의 명확화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하고, 프라이버시보호라는 기본이념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은 민감정보(sensitive data)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을 마련해서 특성에 맞춘 취급을 하도록 한다.¹³⁶⁾

나아가 고도로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고려되는 정보종별을 포함)에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¹³⁷⁾

③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개인정보의 적정이용 및 유통을 위한 절차 등의 올바른 형태

투명성확보를 원칙으로 해서 이용목적의 확대에 있어서 사업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와 제3자 제공에서의 본인동의원칙의 예외규정(아웃아웃, 공동이용 등)의 올바른 형태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취급시의 규정의 충실화(동의취득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¹³⁸⁾

또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그 외 다른 형태의 프라이버시침해로 이어지는 사태발생의 위험성 또는 영향에 관한 평가(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실시 및 공표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136)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37)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38)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도 평가사항, 기준, 평가대상, 실시방법, 평가 방법 등의 구체화를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¹³⁹⁾가 수행하는 특정개인정보보호평가 제도¹⁴⁰⁾를 참고하여 검토한다.¹⁴¹⁾

제 4 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의견

1. 의견개진 이유

일본의 경제인들이 모임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2014년 3월 18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¹⁴²⁾

세계 기업은 사람, 물건, 돈에 비할 제 4의 경영 자원으로 “정보”에 주목하고 방대한 정보 (이른바 빅 데이터)의 수집, 축적, 분석, 혁신적인 활용 방법의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개인 데이터이다. 적절한 정보 보호 관리 체제하에 널리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 간에 횡단적인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신사업 창출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향한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9) 번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감시 및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번호법이란 2013년 5월 성립한 「행정절차에서의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서 일본주민 각자에게 고유의 번호(개인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법인번호도 포함)이다.

140) 특정개인정보평가제도는 특정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려고 하거나 또는 보유하는 행정기관과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후에 특정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그 밖의 사태를 발생시킬 리스크를 분석해서, 그러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특정개인정보란 개인번호를 내용에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41)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平成25年12月20日)

142) 이하에서 기술하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검토의견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인터넷사이트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19.html>를 번역·발췌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개인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규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 활용을 주저하는 한편, 소비자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월 제안하였던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한 경제 재생을 목표로” 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규칙의 검토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에 내각에서 결정된 “일본 재생 전략” 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활용 환경 정비가 명기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활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후 IT 종합전략본부는 “개인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제도 재검토 방침”(이하 “제도 재검토 방침”)을 책정 해, 현재 2015년 정기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하고, 성장 전략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제도개선의 기본관점

(1)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향상

개인 데이터의 활용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칙의 불명확에 있다. 이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새로운 사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제도의 회색 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구비한 간명 규칙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의 적절한 균형확보

이번 제도 검토의 주된 목적은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민간의 힘을 최대한 이끌어 성장 전략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보를 취

급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지를 견지하면서 개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적절한 균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강·의료, 방재·감재 관련 등 공공성이 높고, 사회적 편익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의 취급에 충분한 배려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활용 촉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특별 입법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고급 활용의 촉진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도의 재검토에 있어서는 항상 비용 효율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자는 법의 준수를 위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요구된다.

첫째, 이번 제도 검토는 사업자가 가공에 의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저감 한 데이터의 이용·유통시 해당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규칙이나 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큰 기동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는 적절한 개인 정보의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업자의 업무 부담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자가 이러한 개인 데이터의 이용·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래 이상의 규제 등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현재 주무대신 제도 하에서 사안 등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보고,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를 계기로 중복 행정을 배제해야 한다.

셋째, 각 부처별 지침과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조례 및 지침이 기업의 준수 비용을 높이고 있으며 최대한의 통일화가 요구된다.

넷째, 기업이 취급하는 개인 데이터 속에서 특히 개인정보로의 예민성이 낮은 데이터는 더 간단한 취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술혁신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제도

개인 데이터의 활용은 초기 단계에 있다. 기술 혁신의 속도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감안하면 변화에 대응하고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를 도모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바람직하다. 특히 법 개정 시 시간이 걸리므로 지침의 기동적인 재검토에 의한 대응이나 다중 이해 관계자에 의한 규칙 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국제적인 제도와의 조화를 위한 주체적 대응

정보가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하는 오늘날은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제반 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하다. 물론 법 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장 적합한 규칙을 먼저 구축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외에서 역차별문제를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가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조화를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1) 정의의 명확화

우선, “보호되어야 개인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한다. 그 때, 외국의 정의와의 괴리는 피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연락처 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호가 과잉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줄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부여 할 것이다. 해당 데이터를 제3자 제공의 동의 취득 원칙의 예외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불명확성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가 끝없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가 특정될 가능성이 낮은 정보(익명화 정보)를 제3자 제공의 경우 동의원칙의 예외로 해야 한다.¹⁴³⁾

(2) 제3자 기관에 대한 의견

① 목적 및 권한

“제도 재검토 방침”에서는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집행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제3자 기관은 개인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통한 성장 전략에 기여를 주된 목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일변도가 아니라 활용의 촉진면에서의 성과도 제대로 평가 되는 조직으로 해야 한다.

제3자 기관의 기능·권한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규칙의 명확화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칙이 불명확한 채 현장 검사 권한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 사업활동은 위축되고 제도 검토의 목적은 이루지 않는다. 또한 조사·집행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사전 권한 행사요건을 명시하고, 제3자 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제3자 기관의 소관 사무의 하나로 일본의 행정기관을 대표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참석 등 외국과의 상호 작용을 할 것을 명기해야 한다.

② 이중행정의 배제

본래 사업자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은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 주무대신 제도를 남긴 채 제3자 기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143) “개인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에 의해 특정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반면, “개인 데이터”는 개인 정보에서 개인의 행동·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있는 것에 대해 산업계는 우려하는 의견이 강하다. 주무대신 제도를 남기지 않을 수 없으면 주무대신 제도와 제3자 기관의 이중행정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현재 주무대신 이외에 제3자 기관이 감독하는 등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행정 창구는 일원화하고 만일에도 여러 행정기관에서 기업에 대해 중복보고·설명의 청취를 요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간에 법령 등 다른 해석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집행 등의 본연의 자세

제3자 기관은 현장검사 권한 등 현재 주무장관에게는 없는 강력한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권한의 행사는 가공에 의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저감한 데이터의 이용·유통(“본인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등)을 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점은 처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자가 이러한 형태의 개인 데이터의 활용은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개인정보 관리업무 등만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등을 강화해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의 감독권한 강화의 전제로서 사업자가 판단 곤란하지 않도록 충분히 명확한 정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타 다른 법령¹⁴⁴⁾에 따라 타사에서 조회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제3자 기관은 다른 법령의 소관 부처와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령의 요청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그 수법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에게 큰 사무부담을 부과할

144) 국세 징수법, 변호사 법 등

우려가 있어, 현재의 법적 의무는 시기상조이다. 우선은 정부, 지방 공공 단체의 향후 활용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 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4) 본인에 의한 개시, 이용정지 등의 청구권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배려하면서 부여될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남용으로 공개 정정 등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불합리한 주장을 배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설정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구조로 하도록 실제 기업실무에 입각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5) 회색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제도구축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방법의 적법성 등에 관해 법령, 가이드라인 등의 해석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사용하기 편리한 회색지대 해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이른바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의 벽”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의한 산업부흥이라는 목표 하에 특히 이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업자의 “이용 및 활용의 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하면서 신산업과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의 안전 및 안심 향상 등을 위한 이용 및 활용을 실현하는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4. 국제적 조화의 추진

(1) 국제 규칙 제정에 참여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국제적인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기업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는 뜻을 법률에 명기해야한다.

(2)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전의 원활화 확보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이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 있지만,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직원정보와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해외 자회사 및 지점 등 사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 워크의 주지 및 참여 등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 데이터 보호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타국으로의 정보 이전 내용은 과도한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업무 위탁에 관한 생각을 참고할 등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을 전제로 자사의 자회사 및 지점 등으로 자사와 동등한 안전 관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같은 그룹 기업 등과의 사이의 데이터 이전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5 절 2014년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

1. 제정연혁

2014년 6월 19일 제정·승인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 대강」은 2013년 12월 20일에 IT 종합전략본부에서 결정된

「개인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제도 재검토 정책」,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 그리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산업계에 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개 정에 지침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한 것이다. 향후 내 각관방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조정하면서 필요한 사항과 방향을 수정한 다음, 제도 설계의 세부 사항 등을 정비하여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¹⁴⁵⁾

2. 추진과제

(1) “이용 및 활용의 벽” 제거

① 회색지대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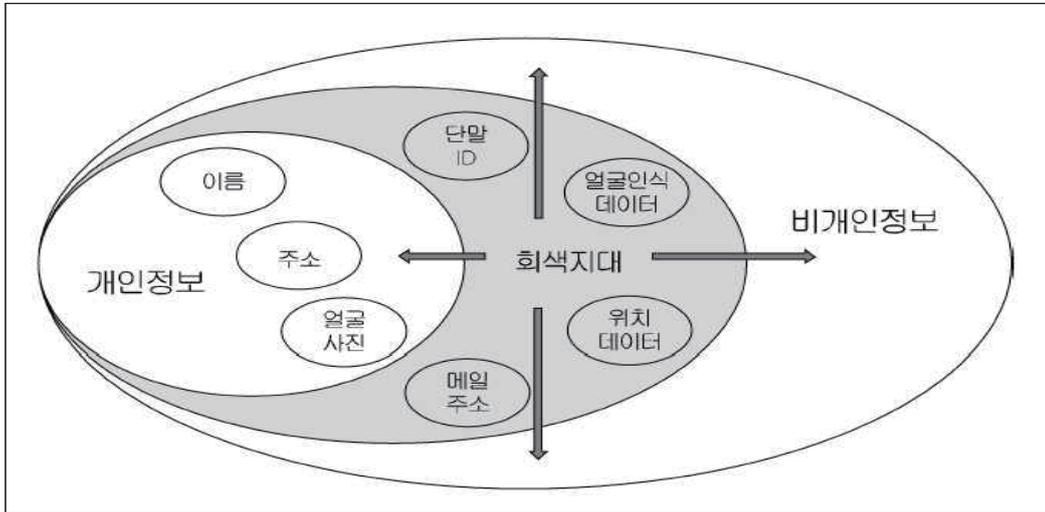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의 벽”을 발생시키고 있는 회색지대¹⁴⁶⁾의 요소는 정보의 다종·다양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을 배경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법해석의 불명확함
- 특정개인이 식별되는 상태가 아닌 개인정보라도 특정개인의 식 별에 연결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취급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해서 보호되는 대상 및 취급 에 대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제의 불명확함

145) <http://www.kantei.go.jp/jp/singi/it2/info/h260625.html>; 이하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퍼 소날데이터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201 4. 6. 19. 에서 번역·발췌하였다.

146) 일본에서 사용하는 “회색지대”라는 용어는 매우 생소한 표현이다. 필자의 입 장에서 회색지대란 우리나라에서의 말하는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 라서 제도개정대강에서 표현하고 있는 회색지대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 대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의미를 갖는 곳으로 보인다.

<그림 6> 개인정보보호의 회색지대



* 출처: 한은영,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 제26권 제13호, 2014, 24면에서 발췌

사업자에게 있어서 정보보유의 현상과 이용 및 활용의 때에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불명확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및 활용의 벽”을 제거하는 기폭제로서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유효하게 이용 및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②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등의 불안을 해소해서 적절한 취급에 의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관련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동성 있는 대응책

정보의 종류와 이용 및 활용방법,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고,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회색지대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한 우려의 해소를 제정이나 개정 등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하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 범위와 명령이나 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 범위를 적절하게 나누고 기동성있는 대응을 가능하도록 함에 있어서 유익한 민간의 자주적인 대응을 보조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확실한 제도집행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것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절한 제도의 집행이 필요하며,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독립하고 공정한 입장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밝힌 민간의 자주적인 대응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도 인정(認定) 등과 관련된 공적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적기관의 체제정비로서 고충상담창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면서 가이드라인에서 법해석의 제시 등으로 관련 사항을 보급하고 알리는 것이 기대된다.

(4)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

기업활동이 세계화되고 있고 일본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과의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이전시킬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공유와 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논의와 법정비의 전전상황을 고려

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를 갖춘 신뢰성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도개정 대강의 기본적인 틀

(1)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의 이용과 활용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정보를 분야를 넘어서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때에 목적 외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법의 제도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이용 및 활용의 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를 고려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규율에 더해 새로운 일정한 규율 하에서의 원칙으로서 본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제3자 제공 등을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특정성을 줄인 정보”로의 가공과 본인의 동의를 대신한 취급에 관한 규율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정보 등과 같이 적절한 취급이 요구되면서 본인의 이익과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용 및 활용이 더욱 기대되는 정보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한다.

(2) 기본적인 제도의 틀과 이것을 보완하는 민간의 자주적인 대응의 활용

회색지대의 내용과 개인의 권리와 이익 침해의 가능성과 정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황과 개인의 주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서 법률에서는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명령, 규칙과 가이드라인 및 민간의 자주적인 규제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주요한 제도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련 취급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다.

둘째,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소비자 등도 참여하는 ‘멀티스тей크홀더(Multistakeholder)’의 개념을 활용해서 민간단체가 업계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운용규칙(예를 들어 개인의 특정성을 낮춘 정보로 가공하는 방법 등)과 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업계독자의 규칙(예를 들어 정보분석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침해에 대한 대응책 등)을 책정하고 인정(認定) 등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제3자 기관이 관련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3) 제3자 기관의 체제정비 등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제도집행의 확보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서 법령과 민간의 자주규제 규칙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독립한 제3자 기관의 체제를 정비한다. 주요한 제도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법정사항과 민간의 자주규제규칙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제3자 기관의 체제를 정비한다.

둘째, 제3자 기관에 대해서는 변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제3자 기관은 현재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해서 주무대신이 갖고 있는 기능 및 권한에 더해서 입회조사 등의 기능과 권한을 갖고, 민간의 자주규제규칙의 인정(認定) 등과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해서 상대방 국가가 인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수준과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민간단체의 인정(認定) 및 감독 등을 실시한다.

넷째,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았던 본인의 개인정보 개시 등에 관한 “청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나아가 제도개정에 있어서는 국경을 넘는 정보유통을 저해하지 않도록 외국의 제도와 국제사회의 현상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갖춘 최적의 제도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이전시의 보호대책과 국경을 넘는 정보유통의 실태를 고려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적용 등을 수행한다.

4.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1) 목적 및 기본이념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더욱 더 촉진하는 것이 기대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취급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맞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의 균형을 맞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입 등

①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낮춘 정보의 취급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에 관해서 본인의 동의에 근거한 경우에 더해서 새롭게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낮춘 정보로 가공한 것에 대해서 첫째,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과 취급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이익 침해의 우려에 유의, 둘째,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으로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취급을 규정함으로써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를 원활하게 이용 및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낮춘 정보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의 유용성과 다양성을 배려해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 등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렇게 가공방법 등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자주규제규칙을 책정하고 제3자 기관은 당해 규칙 또는 민간단체의 인정(認定)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가공방법에 대해서는 모범실무(best practice)의 공유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취급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질을 고려해서 해당 정보의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 등을 폭 넓게 수렴하여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 유형, 취급의 적절한 방안을 조사 및 검토한다.

(3) 기본적인 제도의 틀과 이것을 보완하는 민간의 자주적인 대응의 활용

① 보호대상의 명확화 및 그 취급

개인정보 중에는 현 상태로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이용 및 활용의 벽”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개인의 권리 및 이익 보호와 사업활동의 실태를 배려하면서 지문인식정보, 안면인식정보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것 중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규율을 정한다.

또한 보호대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조직, 활동실태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사회의 실태에 맞춘 유연한 판단을 하도록 유의하면서, 기술발전과 새로운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해서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나아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등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이 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면서 개별사업에 관한 사전상담 등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한다.

② 기밀정보(민감정보)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및 전과나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기밀정보로 정하고, 개인정보에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급을 금지하는 등 신중한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

단,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실태 및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취득,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에 근거한 경우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보호를 위해서 필요가 있는 경

우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취급에 관한 규율을 규정하도록 한다.

③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개선

첫째, 정보가 집적, 대조 및 분석 등이 됨으로써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개인정보가 갖는 다각적인 가치를 적절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목적으로 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이용목적의 변경 시의 절차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이용목적의 변경 시에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이용목적에 의한 이용 및 활용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이용목적의 변경을 거부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에 한해서 변경 후의 이용목적에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정보의 성질 등에 유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다. 나아가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때에 특정했던 이용목적으로부터 크게 다른 이용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규율을 도입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서의 옵트아웃규정¹⁴⁷⁾에 대해서는 운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한 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본인이 위의 옵트아웃규정을 이용해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옵트아웃규정을

147)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당해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는 것.

이용에서 제3자 제공을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요건에 더해서 제3자 기관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는 본인통지사항¹⁴⁸⁾ 등을 신고하는 외에 제3자 기관은 신고된 사항을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 때에 현재 적절한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배려하면서 적용대상 및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다.

넷째, 공동이용¹⁴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현행법의 해석에 혼란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공동해서 이용하는 자 전체가 하나의 취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인식(과약)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인정된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한 운용을 도모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실태를 고려해서 본인에게 있어 알기 쉬운 동의의 취득방법 등에 대해서 소비자 등도 참여하는 멀티스тей크홀더 프로세스의 개념을 활용한 자주규제규칙 등에 의해 개선을 도모한다.

여섯째,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있어서 보유개인정보 취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관

148)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당해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①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것
- ② 제3자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제3자에 대한 제공 수단 또는 방법
- ④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당해 개인이 식별되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는 것

149)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4항 제3호

개인정보를 특정한 자와의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동해서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공동해서 이용되는 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는 공동이용자 내부에서의 정보공유 또는 제3자 제공의 규정의 예외로 한다.

점에서 당해 정보의 보존기간 등의 공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④ 민간주도에 의한 자주규제규칙의 책정·준수제도의 창설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의 촉진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루기 위해 멀티스테이크홀더의 개념을 활용한 민간주도의 자주규제규칙의 틀을 창설한다.

자주규제규칙을 책정하는 민간단체는 법령 등의 규정 외에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요하는 과제에 관해서 정보의 성질과 시장구조 등의 업계나 분야별 특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서 규칙을 책정하고, 당해 규칙의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3자 기관은 당해 규칙 또는 민간단체의 인정(認定)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각 정부부처의 관여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과 각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⑤ 민간주도에 의한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 이전제도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원활한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3자 기관의 인정(認定)을 받은 민간단체가 국경을 넘어서 정보유통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 상대당사국이 인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수준과의 적합성을 심사해서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는 제3자 기관의 감독에 따르며, 나아가 각 정부부처의 관여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과 각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4) 제3자 기관의 체제정비 등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제도집행의 확보

① 제3자 기관의 체제정비

가. 전문위원회 설치 등

전문적 지식의 집중화,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신속·정확한 법집행의 확보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독립한 제3자 기관을 설치해서 체제정비를 도모한다.

번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내각총리대신 하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자 기관은 번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에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감시·감독,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위원을 증원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배려하면서 이용 및 유통이 촉진되도록 균형을 갖춘 인선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무국에 대해서 필요한 체제의 구축을 도모한다.

나. 권한·권능 등

제3자 기관은 현행 주무대신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권한·권능(조언, 보고요구, 권고, 명령)에 더해서 지도, 입회검사,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주무대신이 갖고 있는 인정(認定) 개인정보보호단체에 대한 권한·권능(인정, 인정취소, 보고요구, 명령)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3자 기관은 민간주도에 의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체도를 창설함에 있어서 자주규제규칙의 인정(認定) 등을 수행한다.

나아가 국경을 넘는 정보유통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창설에 있어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인정, 감독 등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고려하여 총무대신의 권한·기능 등¹⁵⁰⁾과 제3자 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 각 정부부처 대신과의 관계

제3자 기관의 설치에 따라서 위의 권한 등을 제3자 기관에 부여하는데 있어서 제3자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감독 등이 가능하도록 각 정부부처대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정리에 있어서는 독립한 제3자 기관을 설치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제3자 기관과 각 정부부처와의 역할의 명확화를 도모하면서 중첩적인 집행을 피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 밀접한 연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제3자 기관의 집행체제(인원, 예산 등)과 전문적 지식의 집적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주무대신이 소관사업에 대해 축적해 왔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와의 연계에 대해 역할·권한을 명확히 한다.

제3자 기관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분부국으로부터 집행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비한다.

라. 기 타

제3자 기관은 위의 업무 외에 아래와 같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첫째,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옵트아웃규정을 이용한 제3자 제공에 관한 신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공표한다.

150) 행정기관 장(독립행정법인)에 대한 보고요구, 보고결과의 공표,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등.

둘째, 국제적인 대외창구의 기능을 하며, 외국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등의 적절한 취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국집행당국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의 촉진과 보호 등을 위한 방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내각총리대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한다.

넷째, 국회에 대해서 소관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개요를 공표한다.

다섯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시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하고, 당해 보고를 종합하여 개요를 공표한다.

여섯째, 소관사무에 대해서 법령의 실시 등을 위해 위원회규칙을 제정한다.

일곱째,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보호에 관한 홍보 및 개발을 수행한다.

마. 벌칙 등

벌칙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의 권한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고 새롭게 마련되는 의무 등의 이행을 준수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의무의 내용과 성질에 맞는 규율을 정한다.

과징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서 계속하여 검토한다.

② 행정기관, 독립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와의 사이에서의 규칙의 정합성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특질을 고려하여 당해 정보의 소관부처 등과의 협의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보호대상의 명확화와 취급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관해서 조사 및 검토를 한다.

또한 이번의 제도개정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을 검토한다.

③ 개시 등의 올바른 모습

현행법의 개시, 정정 등과 이용정지 등에서의 본인의 요구에 대해서 재판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그러한 때에 개시, 정정 등과 이용정지 등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와 사업자의 부담과의 균형을 배려해서 현행법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남소방지의 요청도 고려하여 규정을 정리한다.

(5) 세계화에 대한 대응

① 역외적용

국외의 거점에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국외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현행법이 적용가능한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해당요건을 개정하도록 한다.

② 집행협력

외국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등의 적절한 취급을 담보하기 위해 제 3자 기관이 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관계법령에 상당하는 법령을 집행하는 외국집행당국에 대해서 그 직무 수행에 기여하는 정보제공을 한다. 또한 국제적인 집행협력에 관한 제도에 참여하여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③ 다른 국가와의 정보이전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외국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등(외국사업자로부터 제공된 개인정보 등을 포함)을 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제공 등을

받는 외국사업자에게 있어서 개인정보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술 발전에 맞춘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이전의 유형에 맞춘 조치의 내용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제3자 기관의 인정(認定)을 받은 민간단체가 국경을 넘어서 정보유통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 상대당국가가 인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수준과의 적합성을 심사해서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6) 그 밖의 제도개정사항

①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한 취급

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성질 및 취급태양에 따른 적용제외

CD-ROM, 전화번호부,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사람의 작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치회, 동창회 등 구성원 내부에서 연락망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의 성질과 취급태양을 고려해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를 적용제외로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 및 내용, 취급태양에 따른 배려

현행법에서는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의해서 식별되는 특정개인의 수가 5,000인 이하인 경우,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권고 및 명령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학술연구목적의 개인정보 취급

학술연구의 목적에서 제3자 제공에 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공을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학문의 자유에 배려하면서 강구해야 할 조치를 검토한다.

5. 계속검토 과제

(1) 새로운 분쟁처리체제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련한 사안에 특화된 분쟁처리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고충이나 상담 건수의 추이, 권고나 명령권한의 발동 건수 등에 비추어서 앞으로 발생할 분쟁실태에 맞추어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2) 프로파일링

다양한 종류의 대량정보를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혁신과 이러한 것들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프로파일링의 대상범위, 개인의 권리와 이익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책 등에 대해서 현재의 피해실태, 민간주도에 의한 자주적 대응의 유효성, 외국의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검토한다.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 PIA)¹⁵¹⁾

번호법에 있어서 특정개인정보보호평가의 실시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한다.

151) 개인정보의 수집을 동반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개선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적정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4) 명부업자¹⁵²⁾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이른바 “명부업자”) 등에 의해 판매된 개인정보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 부적절한 권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조장하는 것, 프라이버시 침해에 연결될 수 있는 것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와 소비자피해의 발생과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한다.

152)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를 정리해서 검토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한 형태로 판매하는 업자로, 대부분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를 말한다.

제 5 장 시사점

제 1 절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1. 빅데이터 추진전략으로서 “정부 3.0”

(1) 정부 3.0의 개념

정부 3.0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³⁾

다른 한편, 정부 3.0을 “고도로 지능화된 ICT와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행정업무 방식과 절차를 재설계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 글로벌 공동체 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구성원 간 상호거래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동반자의 역할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행정체제 혹은 국정 운영 체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¹⁵⁴⁾

이처럼 정부 3.0에 대한 개념이 일의적으로 정리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개념은 국내 IT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예로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미래기획위원회 보고회에 따르면, ① 빠른 통신망을 통한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서 한 단계 발전된 인간과 사물간의 의사소통, ② IT 변화를 통해 전 산업을 융합하여 산업경쟁력 제

153) 정부부처 합동회의, 2013. 3면

154) 명승환, 스마트 사회 진화에 따른 Gov. 3.0 기반의 전자정부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Local Information Magazine』Vol., 2012, 61면.

고, ③ IT 기술의 단편적 적용이 아닌 지능형, 양방향의 적용, ④ 때와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는 빠른 통신의 구축 등의 미래전략을 발표하였다는 것과 연계지을 수 있다.¹⁵⁵⁾

여기에 더하여 현재 인터넷은 Web 2.0에서 Web 3.0인 지능형 웹 (Interlligent Web) 시대로 진화하고 있으며, Web 2.0에 기반을 두고 공공정보 공개, 기관 간 정보공유, 참여의 확대 등으로 시민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Web 3.0 시대가 도래할 것¹⁵⁶⁾ 이라는 학계의 의견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3.0은 정부측면에서는 공생발전, 안전한 국가, 정부 효율성, 투명성 사전 예측적 전자정부, 서비스 측면에서는 정보의 공유, 개방, 지능화, 선제적 서비스 등으로 특징지우고 있다.¹⁵⁷⁾ 결국 정부 3.0은 상상, 추정 등이 아닌 실증적인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 등 데이터 기반의 국가미래 전략의 수립체제의 구축, 광범위한 데이터의 활용으로 사회적 비용의 획기적 감소, 국민 맞춤형 선제적 공공서비스 창출¹⁵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정부 3.0과 빅데이터

현재 국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부 3.0에 대한 논의상황을 보면, 적어도 정부 3.0은 고도 ICT 기술과 이의 사회적 연결망, 공공정보의 적극 개방과 이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즉 정부 3.0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고도의 IT

155) 미래기획위원회/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의 영원한 힘 IT-IT KOREA 미래전략, 미래기획위원회 제5차보고회의 자료집 참조

156) 류현숙 외, Web2.0 시대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추진전략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8-10, 2008. 229면.

157) 류광택, 미래 전자정부 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3.0의 가치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326-327면; 명승환, 전개논문, 61면

158) 이재호, 정부 3.0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3, 54면.

또는 ICT 연결망(인터넷)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전략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빅 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인바, 결국, 정부 3.0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기조, 정부 3.0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빅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다.¹⁵⁹⁾

정부 3.0과 빅 데이터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OECD에서 제시하였던 빅 데이터의 정책적 핵심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빅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개방성 제고”로서 개방성(Open), “정보보호 우려 해소 및 프라이버시의 합법적 이용활성화”로서 안정성(Safety), “빅 데이터를 ICT 분야 외에 다른 분야로 확산하여 혁신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다른 기업과의 협업확대”로서 가치성(Valuable), “빅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용자 교육 강화”로서 전문성(Skilling)을 제시하였다. 즉 빅 데이터 정책의 핵심은 개방성(Open), 안정성(Safety), 가치성(Valuable), 전문성(Skill)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빅 데이터 핵심요소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⁶⁰⁾

첫째, 개방성(Open)은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대규모 IT자원이 필요한 교육, R&D 등에 클라우드 및 빅 데이터를 도입하여 시장확대 지원, 기술표준화를 통하여 특정 기업 및 기술에 대한 종속을 막고 다른 장비와의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반경쟁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안정성(Safety)은 정보보호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과 프라이버시 유출방지, 개인정보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와 맞춤형 서

159) 김정미/윤미영, 국민 공감형 정책시행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IT&Future Strategy』 제14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면

160) 이하의 내용은 OECD, 혁신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현안 해결 논의, OECD 대표부, 2013, 4면 이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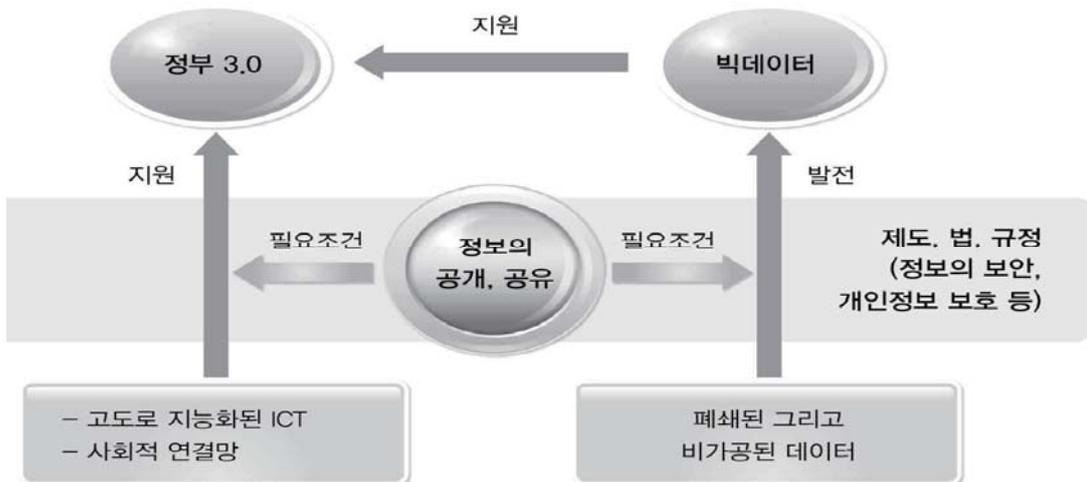
비스를 위한 생산적 활용'의 균형정책 권고를 내용으로 한다.

셋째, 가치성(Valuable)은 특화된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으로 발전을 내용으로 한다.

넷째, 전문성(Skilling)은 빅 데이터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국경간 서비스에 따른 복잡한 규제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3.0과 빅 데이터를 이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면, 정부 3.0은 빅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정비가 필요한 대상은 OECD가 제시한바와 같이 빅 데이터의 개방성, 안정성, 가치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 3.0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대 국민서비스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정부 3.0과 빅 데이터와의 관계



* 출처: 이재호, 정부 3.0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3, 70면

이에 따라 현재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4대 기본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등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4> 정부 3.0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전 략	중점추진과제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민·관협치 강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서비스 정부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출처 : 안전행정부, 정부 3.0 추진계획, 2013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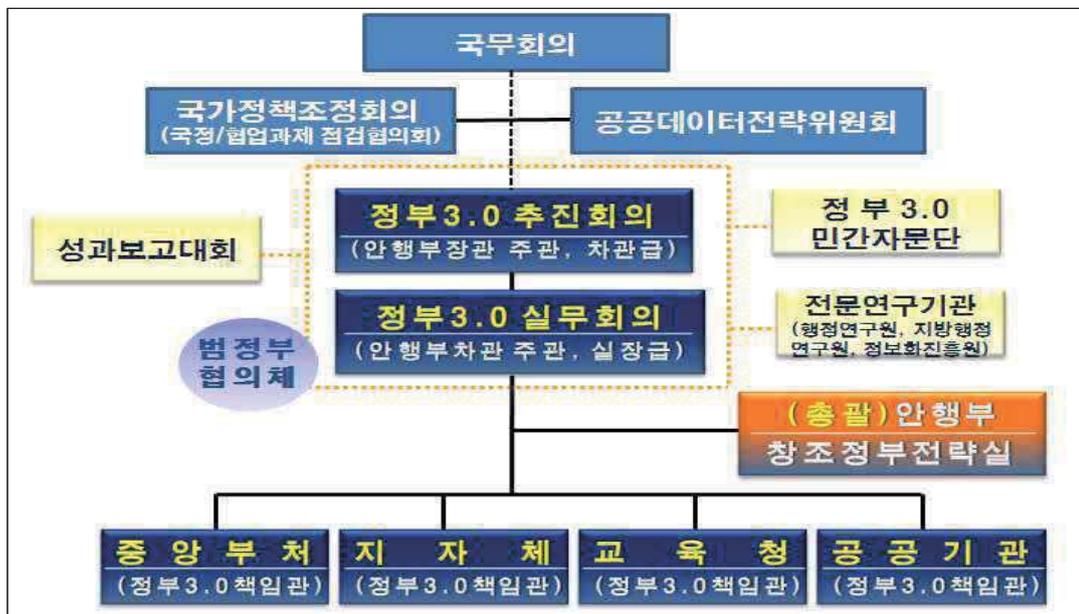
(3) 정부 3.0 추진체계

현재 정부에서는 빅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로 정부 내에 정부 3.0 추진회의 및 실무회의(안전행정부)를 구성하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추진협의회(청와대), 협업점검협의회(국무조정실)

등 국정과제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국정·협업과제를 지원·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 공공정보의 적극 개방을 추진하며, 분기별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정부 3.0 전체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⁶¹⁾

정부 3.0의 개별 중점 추진과제들은 기반마련(2013년 상반기), 본격 추진(2013년 하반기), 정착 및 확산(2014년-2017년)으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개방중인 공공정보에 추가하여 개방확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주관기관과 연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과제, 빅 데이터 시범과제 등 개별과제들은 분야별, 기관별 추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¹⁶²⁾

<그림 7> 정부 3.0 추진 체계



* 출처: 방민석, 정부 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정책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제16권 제3호, 2013. 9., 143면.

161) 방민석, 정부 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정책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3. 9., 143면.

162) 방민석, 전개논문, 143면.

2. 최근 국내 빅 데이터 추진사례

(1) 안전행정부 빅 데이터 활용 확대 정책

2014년 1월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2017년까지 97개 빅 데이터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¹⁶³⁾

이중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지원 과제로 선정한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 관련 23개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2013년에 완료된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조기경보’, 경찰청 ‘범죄확률 사전예측’, 통계청 ‘일일 물가분석’ 등 주요 과제들의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되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2013년 12월 구축된 ‘빅 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을 이용하여 행정기관들이 공개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분석·공유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는 공공부문의 빅 데이터 추진전략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수립과 현안해결을 지원할 ‘국가미래전략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빅 데이터 처리·저장 등 기초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63) 안전행정부, 빅 데이터 활용확대 방안, 빅 데이터 활용본격화, 복지·치안·물가 등 해결사, 행정안전부/여가부/통계청 합동 보도자료, 2014. 1. 7, 참조. 이하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1-2면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2) 보건복지부 빅 데이터 개방 정책

2014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공부문이 보유한 빅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하기 위한 실천적인 장(場)을 마련하였다.¹⁶⁴⁾

의료정보지원센터에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다양하고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빅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사무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빅 데이터의 민간개방을 통해 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② 데이터 연계(공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연구 활동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며, ③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콘텐츠 발굴을 통해 국민 편익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데이터 개방추진

2014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¹⁶⁵⁾

이는 민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보유 중인 548종의 공공데이터 중 263종의 공공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 말

1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공공기관 최초! 빅데이터 개방·공유의 장(場) 열렸다”, 2014. 4. 17. (<http://www.hira.or.kr> 참조).

165)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미래부, 민간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2014년도 미래부 소관 336종 공공데이터 개방-, 2014. 8. 11(<http://www.msip.go.kr> 참조).

까지 개방 예정인 73종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404종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내년까지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전면 개방이 제한된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개방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익명화 처리 등 기술적 조치 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공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표 5> 미래창조과학부 분야별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분 야	종 수	공공데이터
과학기술	246(60.9%)	과학기술인용색인DB, 생명공학백서 등
정보통신	89(22.0%)	wifiDB, 정보보호통계, SW제품정보DB 등
교육	30(7.4%)	수학과학교육정보, 국가기술자격실기공개문제 등
일반행정	26(6.4%)	입찰정보, 경영정보, 기록물 등
수송및교통	8(2.0%)	우편요금DB, 우편물 운송차량 운행정보 등
기타	5(1.2%)	암환자 DB, 방사선치료환자 검체자원 등
합계	404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참조.

제 2 절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에 따른 법제도

1. 추진체계

현재 국내 빅 데이터 관련 법제의 입법동향을 보면, 우선,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명시적으로 빅 데이터를 언급하고 있는 단일의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18조제3항 정보화전략국의 사무분장규정에서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정부 3.0 활용지원(제6호), 빅 데이터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제56호)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형태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15조제3항 창조정부조직실에 대한 사무분장규정에서 정부 3.0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종합계획 수립(제1호), 행정정보 관련 빅 데이터 기반구축·운영 및 활용(제17호), 공공데이터 개발·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제17의4)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013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 정비 및 이에 따른 소관사무 분장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다. 물론 이들 조항이 최근 들어 정부 3.0과 빅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이들 근거법령은 조직법에 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주관 이 되어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근거가 될 뿐이다. 즉, 빅 데이터 관련 정책에 있어 공공부문의 추진주체만을 정한 것이지, 빅 데이터의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방법, 관련 산업육성 또는 정보보호 등의 빅 데이터 콘텐츠가 입법화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현행 입법체계를 놓고 볼 때, 국내 빅 데이터 정책추진을 위한 본격적 입법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의 성격을 가지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마치 행정규칙 정도에 불과한 성격의 조직법으로만 빅 데이터의 추진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빅 데이터 추진체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국내 빅 데이터 추진체계에 있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예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2.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빅 데이터 전략은 우선 공공정보의 개방과 이를 이용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첫 발걸음이 2013년에 비로서 추진되었다. 2013년 7월 30일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2013년 10월 31일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1) 기본원칙

이 법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제3조), 이에 따르면 첫째,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용편의성 및 보편성 원칙), 둘째,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이용평등의 원칙), 셋째,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

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의 원칙). 넷째,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자유로운 이용권 보장 원칙). 다섯째,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이용한계의 원칙).

(2) 추진체계

이 법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현행법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공개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에 대한 심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하게 하는 등(제6조), 실로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활용을 통한 빅 데이터 정책 추진의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고권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제7조제2항)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안전부가 매 3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분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제7조제2항) 전략위원회 하부에서 전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은 이 법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1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제19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안전부 이외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제8조) 정부단위에서는 최하위에 위치하는 추진체계라 할 수 있겠다.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한편(제12조),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이로써 국내 빅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체계에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특징을 보인다.

(3) 빅 데이터 거버넌스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주도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선언하고 있다(제15조). 아울러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간 협력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제16조).

(4) 공개 및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현행법 제17조에서는 공공부문이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둘째,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항).

한편,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들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공개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당해 기관의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제21조).

(5) 표준화 등 기반조성

현행법 제23조에서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 첫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둘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셋째,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표준화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있다(제1항).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화조치는 공

공기관의 장들이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요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제2항).

더 나아가 제24조에서는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제1항)과 데이터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의 마련을 명하고 있다(제2항).

(6) 데이터의 제공절차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제26조제1항 및 제2항).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제26조제3항).

한편, 이용자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의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하고, 소관 공공데이터 보유 및 관리 기관의 장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7조제5항).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한 데이터가 첫째,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셋째,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넷째,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제28조).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7) 분쟁과 관할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29조제1항).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제29조제6항).

(8) 면책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36조제1항).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보유기관 소속의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

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다(제36조제2항).

한편,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제36조제3항).

3.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체계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차원에서 빅 데이터 정책에 수반하는 개인정보보호의 과제가 반영된 실적은 없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과 빅 데이터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공개는 상호 충돌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에 있어 사전동의 방식(옵트 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빅 데이터의 성격과 상치되는 부분이다.

결국, 국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은 아직 빅 데이터 정책을 뒷받침 해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행법의 상태는 앞서 제시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의 공개와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제 3 절 시사점 도출

1. 국내 법제도 개선현황과의 비교

(1) 법제화 동향 비교

국내 빅 데이터 정책은 정부 3.0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개방을 기초로 국민에 대한 맞춤형 신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고, 이를 위한 법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국내 빅 데이터 정책기조와 일본의 그것은 매우 많이 닮아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개방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보다는 앞서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일본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법률차원의 준비는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공공데이터라는 것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정책은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되,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빅 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안전행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종의 빅 데이터 관련 활성화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정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진과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못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부처 별로 실시계획 중인 빅 데이터 정책은 사실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막혀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 부처에서 공개대상으로 삼는 정보의 대부분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민간정보”가 포함되고 있으며, 이들은 현행법상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제3차 제공, 2차 이용 또는 재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빅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제정에 반대하는 측이 제기한 진정(陳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위 가이드라인(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를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사전동의 없는 빅 데이터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본에서의 최근의 법 개정 논의와 유사하다. 이처럼 양국의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논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즉 일본의 경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기본이념 내지 목표 하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빅 데이터의 활용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2) 법제적 시사점

일본 법제의 특징은 빅 데이터를 이용한 투명성, 신뢰성, 국민참여 및 민관협동 추진, 경제활성화와 행정효율화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정책 목표를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표준 이

용규약(제1.0)」과 2014년 7월 31일 오픈 데이터 유통 추진 컨소시엄에서 제정한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의 제정,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을 마련하고 있다.

①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주는 시사점

일본의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는 공공데이터의 기계 판독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재이용을 인정하는 이용규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재이용 또는 2차 이용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운용 중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개와 공개된 데이터의 재이용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의 법은 공공데이터의 재이용 또는 2차 이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는 우리 법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입법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부표준 이용규약(제1.0)이 주는 시사점

한편, 「정부표준 이용규약(제1.0)」산업계 또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를 다시 한번 더 이용자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규약에서는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공개지침과 이용자의 데이터 재이용 및 2차 이용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과 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 따른 이용제한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재이용 및 2차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의 보유·관리주체인 정부의 재량사항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 및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용허락을 받아 공개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3자의 권리가 표시된 데이터의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내용을 일본의 「정부표준 이용규약(제1.0)」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심의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정작 공공데이터의 이용주체는 민간영역인데, 이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세부기준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에 따라 이용할지 여부는 거시적으로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정부 3.0 정책의 우선순위라 할 수 있는 신시장 창출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현하기에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표준 이용규약(제1.0)」은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이용 및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이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보건데,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유지하더라도, 제11조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의 「오픈데이터 가이드 : 오픈데이터에 대한 규칙·기술안내서」과 「정부표준 이용규약(제1.0)」은 훌륭한 입법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조치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당시를 비롯, 최근 빅 데이터 정책의 이행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개인 데이터의 취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2015년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즉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이다.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빅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제반 법제의 정비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빅 데이터의 재이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신 부가가치 창출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강구 없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일본이 왜 법률차원에서 빅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준다.

(1)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빅 데이터 시대에는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편이다. 현재 일본은 개인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사업자 등 이용자의 데이터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일본은 성장 전략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에 대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장

애(“활용의 벽”)를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도모하면서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과 국민의 안전·안심의 향상 등을 위해 그 활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 일본의 2014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정 대강」에서 결정되지 않은 채 최대 논점으로 남아있는 것은 규제 대상의 구체화였다. 왜냐하면, 각종 개인 데이터가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¹⁶⁶⁾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회색 지대의 상존이 바로 그 이유이다.¹⁶⁷⁾

개인 데이터에 관한 검토회의 기술검토 그룹은 각종 ID번호와 사용내역 등과 같이 “어디의 누구”라고까지는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단말과 대응하여 “어떤 인물”의 정보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 비특정 개인 정보”로 분류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정보의 축적으로부터 “취미나 기호”를 분석하는 기술은 이미 온라인 광고에 도입되고 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인상착의가 형성되는 프로파일링 문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⁸⁾

또한 2013년 6월에 총무성의 연구회가 정리한 보고서에서도 “실질적인 개인 식별성”이라 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검토회에서는 사무국이 제기한 “준 개인정보”¹⁶⁹⁾라는 새로운 개념이 논의를 복잡하

166)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대조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167) 日本經濟新聞, “ビッグデータ、民間で活用ルール、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素案、政府IT 戦略本部、対象範囲なお不透明”, 2014. 6. 10

168) 日本經濟新聞, “ビッグデータ、民間で活用ルール、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素案、政府IT 戦略本部、対象範囲なお不透明”, 2014. 6. 10

169) 하나로서는 개인의 특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량 또는 각종 정

게 한다고 판단하고, 개정초안의 표현에서는 신용카드 번호 및 위치 데이터 등 검토의 주 대상이라고 할 사례가 삭제되었다.

그 대신 “지문인식 데이터, 얼굴인식 데이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것 중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대응하여 규율을 정하도록 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이 해석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정부 3.0 발표와 2014년 빅 데이터 전략을 각 부처별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 공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공공데이터 공개와 이용자의 재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도외시한 빅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은 그 시작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라는 큰 벽에 부딪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빅 데이터를 통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 창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빅 데이터 산업육성 정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하에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본의 법제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일본의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정 대강」에서 밝히고 있는 보호대상의 구체화 및 그 취급, 그리고 민감 정보에 관한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¹⁷⁰⁾

① 보호대상의 구체화 및 그 취급

어떤 퍼스널 데이터가 개인정보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의 활용

보가 수집됨으로써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가칭) 준 개인정보라 한다(技術検討ワーキンググループ, 技術検討ワーキンググループ (2014), 「(仮称) 準個人情報」及び「(仮称) 個人特定性低減データ」に関する 技術的観点からの考察について (中間報告 概要), 2014).

170)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2014).

에 벽이 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이 때문에, 개인의 권리 이익의 보호와 사업활동의 실태를 배려하면서, 지문인식 데이터, 얼굴인식 데이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것 중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대응하여 규율을 정하도록 한다.¹⁷¹⁾

또한 보호대상의 재검토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조직, 활동 실태 및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등 사회의 실태에 맞게 유연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면서, 기술의 진전이나 새로운 퍼스널 데이터의 활용 욕구에 맞추어, 기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등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3자 기관이 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개별사안에 대한 사전 상담 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¹⁷²⁾

② 민감 정보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및 범죄 기록·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예민 정보로 결정하고 개인정보에 이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급을 금지하는 등 신중히 취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¹⁷³⁾

그러나 예민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이용실태 및 현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인의 동의에 의해 취득하고 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법령에 근거한 경우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취급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¹⁷⁴⁾

171)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72)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73)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74)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2) 옵트 아웃 방식의 도입과 특정 가능성 저감 데이터의 활용

개인 정보에 일정한 익명화 조치를 강구하여 “특정 가능성 저감 데이터”로 처리하면 본인의 동의없이 외부 제공을 포함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도입이 제도개정대강의 핵심 중 하나이다.

현행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게의 제공이나 목적 이외의 사용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전동의를 필요하지만, 2014년 대강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공에 의해 익명화한 후 본인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¹⁷⁵⁾

또한 개인이 특정되어질 가능성을 저감한 데이터의 가공방법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유용성이나 다양성을 배려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가공방법은 민간단체가 자체적인 규칙을 책정하고, 제3자 기관은 해당 규칙 또는 민간단체의 인정 등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⁷⁶⁾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대강은 기존 옵트인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옵트 아웃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옵트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빅데이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본의 대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익명성 저감조치를 수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일본의 대강에서는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⁷⁷⁾

175)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76)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77)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3)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기준 정립 및 체계화

일본의 대강에서는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에 의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유통이 매우 용이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¹⁷⁸⁾

사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OECD는 2013년 7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¹⁷⁹⁾을 개정한 것, 미국이 2012년 2월에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¹⁸⁰⁾을 공표한 것, EU가 2014년 3월에 개인 데이터 보호 규칙안¹⁸¹⁾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또한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세계의 데이터가 일본에 집적할 수 있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정보 이용·유통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두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을 꾀하고,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¹⁸²⁾

178)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79) OECD, The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2013

180)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2014

181)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2 March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4

182)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감독 기관 설치

일본의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작성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독립된 행정기관, 즉 제3자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법적으로 대등한, 정부의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관이다.¹⁸³⁾ 기존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27호, 이하 “번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편하여, 개인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¹⁸⁴⁾ 이 제3자 기관은 번호법에 규정된 기존 사무관할에 더해, 개인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감시·감독, 사전상담·고충처리, 기본방침의 책정·추진, 인정(認定)개인정보보호단체 등의 감시·감독,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⁸⁵⁾

다만, 이번 대강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 설립하는 이 기관에서 보호대상 데이터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때까지는 기업이 자율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아직까지는 이 독립기관의 구체적 역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율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제도 등이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¹⁸⁶⁾ 따라서 당분간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⁸⁷⁾

183) 日経コンピュータ, “特集1: 個人データはもう怖くない (part 1) カギは ‘個人特定性低減’”, 2014. 6. 26, 30-33頁

184)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2014).

185)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2014).

186) 日本経済新聞, “個人情報見直し大綱 — 保護対象、詰め切れず”, 2014. 6. 30.

187) 日本経済新聞, “ビッグデータ、民間で活用ルール、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素案、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자 기구의 입법모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자 기구는 현재 정부부처의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소관 권한을 이 기구에 집중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이는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3자 기구는 민간자율단체에 대한 인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권들 갖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관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그 밖의 소관부처로 흩어져 있다. 그리고 사업자 단체에 대한 통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다채로운 소관업무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정부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어우러진다면, 우리의 추진체계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제3자 기관이 설치 및 운영은 우리에게 많은 개선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¹⁸⁸⁾

4. 실질적·체계적 민관협력 체계

최근의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율규제의 전통과 이에 기초한 제도개정의 논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율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는 되어 있다(제13조). 그러나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정부에 의한 자율규제”에 다름 아니다. 톱다운 방식의 자율규제의 권고로서는 실효성이 없다.¹⁸⁹⁾

政府IT 戦略本部、対象範囲なお不透明”, 2014. 6. 10

188)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89)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일본에서의 자율규제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 틀이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업계사정에 맞는 지침의 제정과 운용이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 주무대신이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업계 사정을 반영하여 (그 이상의 보호수준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용한다. 다만 최근의 법 개정 논의에서는 멀티스тей크홀더(multistakeholder) 절차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조되면서 관계자들이 참가한 오픈된 장소에서의 공정성을 갖춘 룰 책정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해 이러한 지침에 대해 제3자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에는 자율적인 지침의 공정성에도 방점이 두어질 것으로 생각된다.¹⁹⁰⁾

둘째, 민간단체의 인정제도를 통해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공신력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인정단체제도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는 행정기관 → 인정단체 → 대상사업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법의 체계 안에서 사업자가 그 단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⁹¹⁾

셋째,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정단체 및 인정단체가 제정한 지침의 숫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은 자율규제를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각 산업분야별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정단체의 주된 업무가 개인정보관련 분쟁의 처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인정단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행정기관의 관련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¹⁹²⁾

190)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91)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92)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다만 제3자기관의 설치가 자율규제의 전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단체와 지침의 인정 주체가 제3자기관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자율규제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⁹³⁾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 자율규제의 수준에 대해 행정기관이 (인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이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업계의 사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의 구체적인 룰의 책정과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모델이기 때문이다.¹⁹⁴⁾

193)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194)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

참고 문헌

- 배동민/박현수/오기환, 빅 데이터 동향 및 정책시사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백문흠/전혜정,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2012년도 통합 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 백의선 외, 일본의 차세대 정보보호 정책방향과 최근동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
- 빅토르 마이어 쉐이버거/케네스 쿠키어(이지연 역),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1세기 북스, 2013
- 성낙인 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송태민, 일본의 빅 데이터 동향조사 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오길영,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보호방안: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권리」 2013년 제2차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3
-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단국법학」 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장병열/김영돈,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정책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3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176면.
- 차상욱, 빅 데이터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IT와 법 연구」제8호,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Active Japan ICT 전략, 2013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분석과 국내 시사점,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 글로벌 정보통신(ICT)·방송 Weekly Issue,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7. 9

岡村久道, 新法解説 個人情報保護法入門, 商事法務, 2003

高芝利仁, 個人情報保護法の全面施行に向けての意義と課題, ジュリスト 1287號, 2005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決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制度見直し方針, 2013. 12. 20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情報処理振興課, 平成19~21年度 情報大航海プロジェクト(評価用資料), 資料7-2, 第1回 情報サービス・ソフトウェアに係る技術に関する施策・事業評価検討会, 2012.

経済産業省, パーソナルデータ利活用ビジネスの促進に向けた、消費者向け情報提供・説明の充実のための「評価基準」と「事前相談評価」のあり方について, 2014

経済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情報処理振興課, 平成19~21年度 情報大航海プロジェクト(評価用資料), 資料7-2, 第1回 情報サービス・ソフトウェアに係る技術に関する施策・事業評価検討会, 2012.

経済産業省, パーソナルデータ利活用ビジネスの促進に向けた、消費者向け情報提供・説明の充実のための「評価基準」と「事前相談評価」のあり方について, 2014

個人情報保護法改正の動向と今後企業が考えるべきこと, 「企業リスクインフォ」2014 No. 2, Inter Risk Report No. 14-034, MS&AD, 2014. 9

慶應義塾大學法學部, 慶應法律學 公法Ⅱ-慶應義塾創立150年記念法學部論文集,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2008

個人情報保護法改正の動向と今後企業が考えるべきこと, 「企業リスクインフォ」2014 No. 2, Inter Risk Report No. 14-034, MS&AD, 2014. 9

技術検討ワーキンググループ, 技術検討ワーキンググループ (2014), 「(仮称) 準個人情報」及び「(仮称) 個人特定性低減データ」に関する 技術的観点からの考察について (中間報告 概要), 2014

企業法務ナビ, 個人情報の利活用に向けて~個人情報に関する制度改正大綱を公表, 2014

内閣官房 I T総合戦略室, 「政府標準利用規約 (第1.0版)」の 解説 2014. 6. 19.

二次利用の促進のための府省のデータ公開に関する基本的考え方 (ガイドライン) (2013年6月25日各府省情報化統括責任者 (C I O) 連絡会議決定

世界最先端 IT 國家創造」宣言, 資料 2-1,

日本經濟新聞, “ビッグデータ、民間で活用ルール、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素案、政府IT 戦略本部、対象範囲なお不透明”, 2014. 6. 10

日本經濟新聞, “個人情報見直し大綱 — 保護対象、詰め切れず”, 2014. 6. 30.

日経コンピュータ, “特集1: 個人データはもう怖くない (part 1) カギは ‘個人特定性低減’”, 2014. 6. 26

참고문헌

宇賀克也・七條浩二・萩原まき子・藤原静雄, 個人情報保護の現状と課題, ジュリスト 1367号, 2008

總務省, 知識情報社会の実現に向けた情報通信政策の在り方 : Active Japan ICT 戦略, 資料 39-3-2, 2012.7.12

總務省, 情報通信白書, 2014

喜連川優, 情報爆発のこれまでとこれから, 電子情報通信学会誌, Vol. 94, No 8, 2011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平成26年6月19日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検討会案),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平成26年6月19日)

パーソナルデータに関する検討会, パーソナルデータの利活用に関する 制度改正大綱 (検討会案) , 2014. 6. 19

オープンデータ流通推進コンソーシアム, オープンデータガイド: オープンデータのためのルール・技術の手引き(第1版), 2014. 7. 31

UNCTAD, “Japan Adopt Privacy Protection Act,” Trade and Development Report(TDR), 1989

John Gantz & David Reinsel, “Extracting Value from Chaos”, IDC VIEW June, 2011

James Manyika & Michael Chui,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McKinsey & Company), 2011

Kitsuregawa, M., Challenge for info-plosion, Proceeding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covery Science, 2007

Kitsuregawa, M. & Nishida, T., Preface: Special issue on information explosion, New Generation Computing, 28(3), 2010

M. Hilbert and P. Lopez, “How to Measure the World's Technological Capacity to Communicate, Store and Compute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2012

<http://www.kantei.go.jp/jp/singi/it2/info/h260625.html>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19.html>

<http://www.caa.go.jp/seikatsu/kojin/houtaikei.pdf#sthash.6qg7zinn.dpuf>

<https://www.gartner.com/login/loginInitAction.do?method=initialize&TARGET=http://www.gartner.com/document/2057>

http://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1&hl=ko&prev=search&rurl=translate.google.co.kr&sl=ja&u=http://www.meti.go.jp/press/2013/03/20140326001/20140326001.html&usg=ALkJrhi8X1zN-nHR4D7Y4Rlj_Z1GkOFb7g

<http://www.caa.go.jp/seikatsu/kojin/houtaikei.pdf#sthash.6qg7zinn.dpuf>

<http://journal.kiso.or.kr/?p=4979#sthash.lfLPt0eP.dpuf>